

1998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7. 11. 8

[입업및산촌구조개선]

총6권중 제6권



농림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8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9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8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개발과(전화 589-2040, 589-2042)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기획과(전화 589-2021, 589-069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8
3. '98. 주요 변경사항	11
4. 해설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자율사업	16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30
3. 주요골자	31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13호)	53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12호)	103
V. 참고자료	127
1. 42조원 지원계획	12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3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3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39
1. 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14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70
3.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공공)	192
4. 발기반정비(공공)	207
5. 일반경지정리(공공)	223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33
7.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248
8. 배수개선(공공)	270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3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22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46
12. 농촌생산기반조사및생산기반정비시범사업(공공)	365
13.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00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41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개량물꼬지원, 청정돈생산공급기지화, 소규모지표수개발, 지하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지역특화개발사업,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471
II. 농업기계화	489
16. 일반농가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491
17. 생산자조직및쌀전업농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540
18.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6
19. 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자금지원(공공)	606
III. 생산및유통개선	613
20. 미곡종합처리장및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615
21.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37
22.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저불제실시(공공)	640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5
23.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지원(공공)	677
24. 화훼계열화사업(공공)	685
II. 생산및유통개선	687
25. 과실생산유통지원(자율)	689
26.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자율)	714
27. 노지채소생산유통지원(자율)	748
28. 특용작물생산유통지원(자율)	766
29. 농산물규격출하(자율)	786
30. 생산자단체유통지원사업(자율)	797
31. 농산물포장센터건설및집하장시설보완(공공)	807
32.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46
33.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868
34.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875
35. 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880
36. 농수산물물류센터(공공)	887
37. 농산물화여객선건조(공공)	901
38. 농수산물도매시장및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공공)	914
39.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921
40.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928
41.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34
42.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954
43.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958
44. 우수농산물수매및유통지원(공공)	967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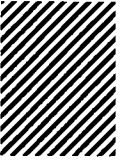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985
45.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자율)	987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가축,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분뇨처리)	
46.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071
47.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080
48.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1089
49.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097
II. 생산및유통개선	1099
50. 축산물종합처리장및공판장건설(공공)	1101
51. 축산물등급판정(공공)	1108
52. 축산물품질향상및유통시설지원(공공)	1113
53. 경영상담·홍보및기술개발(공공)	1140
54. 축산업협동조합경영개선(공공)	1143
55.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1149
56. 사료제조시설및사료원료구입(공공)	1153
57. 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공공)	1164
58. 학교우유급식(공공)	1178
59. 축산자조금(공공)	1185
III. 가축개량	1189
60. 한우개량사업(공공)	1191
61. 젓소개량사업(공공)	1209
62. 돼지·닭개량사업(공공)	1215
63.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223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1251
64.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및환경농업지구조성(자율)	1253
65. 농산물가공산업및특산단지육성(공공)	1295
II. 기술개발및정보화	1381
66.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1383
67.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393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68. 기술지도사업*(공공)	1414
(새기술보급시범사업및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기술시범사업, 품목별전문교육및농업인학습단체육성)	
III. 인력육성	1451
69.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453
70. 전업농및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1490
7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544
72.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공공)	1556
(특성화대학, 자영농수고, 축산교육시설지원,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IV. 소득원개발	1569
73.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571
74. 농공단지육성(공공)	1631
75. 한계농지정비(공공)	1648
76. 농축산경영자금(공공)	1662
V. 생활환경개선	1677
77.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679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시설, 농가주거환경개선*)	
78.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752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775
79.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777
80.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781
81. 임도시설(공공)	1785
82. 영림계획(공공)	1789
83.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1793
8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796
II. 생산및유통개선	1803
85. 임산소득증대(자율)	1805
(단기소득임산물생산, 조경수·분재소재생산)	
86. 임산물이용가공및저장시설(자율)	1824
87. 임산물생산자단체회원조합육성(공공)	1834
8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840
89.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1858
III. 인력육성	1863
90.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1865
91.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1873
IV. 환경임업육성	1885
9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1887
93. 산불방지대책(공공)	1892
94. 사방사업(공공)	1898
95. 산림생태보전(공공)	1902
96. 산촌종합개발(공공)	1908
V. 산림자원조성	1917
97. 해외조림사업(자율)	1919
98. 산림조성(공공)	1925
99. 산림병해충방제(공공)	1935



I . 경 영 기 반 확 충

여 백

79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1. 목 적

-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산주들에게 임업용 기계·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의욕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산주의 소득증대 및 임업기계화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음자지원 확대로 산주자율경영체제 유도
- 민간부문의 임업기계화 촉진
- 생산비용 절감으로 임업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제3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82명 (148대)	15명 (40대)	28명 (41대)	16명 (16대)		
사 업 비	계	5,532	793	1,517	879		
	보 조	-	-	-	-		
	용 자	3,872	554	1,062	615		
	지방비	-	-	-	-		
	자부담	1,660	239	455	264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지원대상 : 소재산주 및 산림경영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집재장비등 임업에 필요한 기계장비
 - 융자조건
 - 금 리 : 연 3%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한 도 액 : 1억원이내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6명	879	615	-	615	-	264
강 원	1명	74	51	-	51	-	23
전 북	1명	74	51	-	51	-	23
전 남	4명	178	125	-	125	-	53
경 남	10명	553	388	-	388	-	16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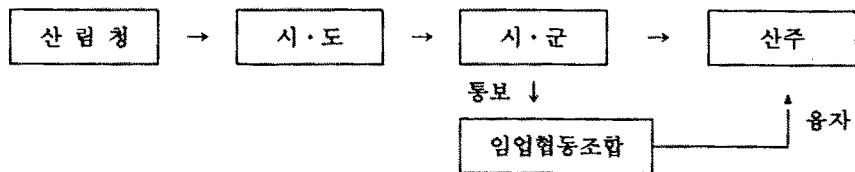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5)
- 시·도 : 농정국 산림과(녹지과)
- 시·군 : 녹지과 또는 산림과
- 임협중앙회 : 금융부(02-416-9421)
- 시·군임협 : 사업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97산림경영장비 지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다.

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법
 - 사업수행주체 : 시·군·구
 - 사업집행절차



마. 기 타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유 자 지 원 : 시·군임업협동조합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 사후관리절차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장비구입활용 및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점검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녹지과, 산림과)

나. 신청자격(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산별시범단지내의 산림소유자
- 임업진흥촉진지역내의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
-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정주 생활권 개발지역내의 산림소유자 등

(2)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산림경영자
- ④ 일반소재산주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절차 : 산주신청→심사(시장, 군수)→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
- 선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영림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 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제9조제4항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기타사항 (유의사항)

- 산림경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융자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융자지원의 연계추진
- 채권보전 : 융자취급기관 여신관계 규정에 의함.

80	사유립협업경영(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1. 목 적

- 영세사유립을 대상으로 협업체를 조직·육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주소득증대와 사유립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확대
- 협업체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회원상호간의 결속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협업경영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영목표 관리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7조(경영구조개선) 및 제5조(재정지원), 동법시행령 제4조(협업경영)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조 직 (운영)	202개	15개 (217개소)	15개 (232개소)	3개 (335개소)		
	공동소득지원	68개	92개	56개	24개		
사업비 ~ 백만원 ~	계	5,249	2,330	2,401	2,302		
	일반보조	3,769	1,299	1,335	1,202		
	농특보조	293	309	320	330		
	지방비	293	309	320	330		
	자부담	894	413	426	440		

※ ()내는 협업체 조직 누계임.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 요

- 협업체가 설립된 지역내 사유림 산주에 대한 산림사업 지도
- 협업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협업체 회원의 소득증진

○ 지원조건, 대상, 단가등

구 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단가	비 고
○ 경영지도사업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시·군 임업협동조합	국 고100%	인건비 운영비	일반회계
○ 산림사업	협업체 회원	자부담의30%	조림(35,569원/ha) 육림(57,997원/ha)	일반회계
○ 공동소득원사업	협업체 회원	국 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표고재배(14,250천원) 목가공(7,500천원) 부산물가공(9,000천원)	농특회계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일반,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	2,302	1,532	1,532	-	330	440
○ 일반회계	-	1,202	1,202	1,202	-	-	-
- 경영지도사업	85명	1,108	1,108	1,108	-	-	-
- 산림사업	1,540ha	94	94	94	-	-	-
○ 농특회계	-	1,100	330	330	-	330	440
- 공동소득원 사업	24협업체	1,100	330	330	-	330	44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 부서

-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 - 961 - 2418)
- 시·도 : 농정국 산림과(임협중앙회)
- 시·군자치구 : 산림과 (녹지과)(시·군임협)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시·군 임업협동조합 및 협업체 회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 재경원에 예산신청하여 국비 소요예산 확보
- 사업비 지원방법
 - 협업경영사업 : 협업지도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산림사업비 지원
 - 공동소득원 사업 : 협업체 기금조성 및 회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소득 사업비 지원 (표고재배, 임업부산물가공, 목가공)

마. 기 타

- 산 립 청 : 지침시달, 사업비(국비)배정
- 시 · 도 : 시·도비 확보지원
- 시 · 군 : 사업대상지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 임협중앙회 및 시·군 임협 : 협업경영지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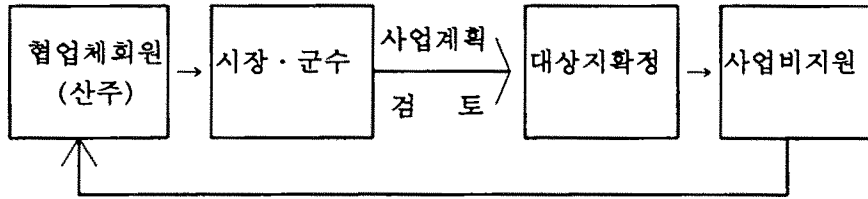
- 협업체 설립확대 및 지원사업의 지속적 관리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임업협동조합)

나. 신청 자격 : 협업체가 구성된 지역내 협업체 회원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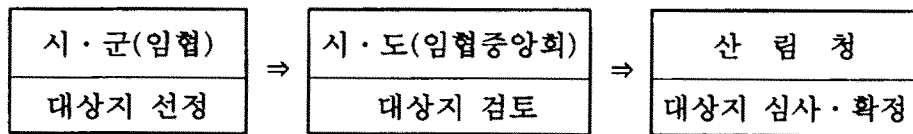
라. 구비서류

농림사업 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마.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임업진흥권역의 영림계획 작성지역
 - 소재 산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협업체 설립 및 지도가 용이한 지역
 - 임업협동조합 자립도가 높은 지역

○ 선정절차



81	임 도 시 설(공공)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입니다.

1. 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시설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시설
- 조림, 육림, 간벌, 목재생산임지 우선 시설로 활용도 제고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 완결형으로 건설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km,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3,800	1,378	1,238	1,178	1,388	6,728	
사 업 비	계	159,901	78,645	77,484	76,030	106,152	512,552
	보 조	71,054	34,247	33,666	33,993	48,000	229,600
	음 자	16,641	10,152	10,152	8,044	10,152	53,352
	지방비	63,174	27,396	26,933	27,194	38,400	183,680
	자부담	9,032	6,850	6,733	6,799	9,600	45,92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요

조림, 육림, 벌채,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 교통개선 및 농산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산림내 임도(산길)을 개설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노선선정계획에 따라 책정된 노선을 통과하는 산림

○ 지원규모

노선선정 계획에 의거 사업량이 책정된 노선의 거리에 따라 기준단비 지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임

나. '98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km,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보조:농특, 용자: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농특)	용 자		
계	1,678	76,030	42,037	33,993	8,044	27,194	6,799
임도신설	1,178	74,030	41,037	32,993	8,044	26,394	6,599
-보조	1,050	65,986	32,993	32,993	-	26,394	6,599
-용자	128	8,044	8,044	-	8,044	-	-
임도보수	500	2,000	1,000	1,000	-	800	200

※ 용자조건 :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용자는 임업진흥기금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2) 961 ~ 2364
- 시 도 : 농정국 산림과(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다.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임도망(노선)계획이 설정된 지역
-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협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임업경영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노선

○ 우선순위

-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노선으로 지역간을 연결하는 노선
- 임업진흥촉진지역의 협업경영상 필요한 노선
- 지역개발등 다목적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노선

○ 선정절차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된 계획 노선을 년차적으로 실행
-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다목적 이용도가 높고 임도시설이 필요한 지역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공정계획

- 1 ~ 2월 : 노선선정 완료
- 3 ~ 5월 : 측량 설계 완료
- 5 ~ 12월 : 공사 실행 및 준공
- ※ 전년도 설계지역은 해빙직후 착공

○ 사업계획 변경

공사 실행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하여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림청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에 예산 신청하여 국비 소요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산림청 사업지시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시·군에 사업 지시
- 시·군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시·군비 확보, 사업설계 및 발주, 실행 지도 감독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후관리 원칙
- 임도를 시공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산주 및 지역주민 공동관리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82	영 립 계 획(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1. 목 적

-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산림경영의 생산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하는 계획 작성
- 산주의 경영의사가 반영된 현실성있는 제도 운영
- 영림계획에 의한 철저한 산림사업 실행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천ha)		1,616	206	167	153		
사 업 비	계	7,550	1,332	1,174	1,078		
	보 조	3,132	550	539	539		
	용 자	-	-	-	-		
	지방비	2,079	549	539	539		
	자부담	2,339	233	96	-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 요
 - 산림현황 조사내용에 따라 10년 계획기간으로 영림계획 작성
 -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 립 : 조림수종, 면적, 수량
 - 육 립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등
 - 벌 채 : 벌채수종, 면적, 수량
 - 임 도 : 임도의 노선, 거리, 시설년도 등
 - 기 타 : 소득사업
- 지원대상
 - 영림계획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 지원단가
 - 영림계획작성 : 7,048원/ha(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위주로 작성경비 보조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53천ha	1,078	539	539	-	539	-
영림계획작성	153천ha	1,078	539	539	-	539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8)
- 시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 · 군 · 자치구 : 산림과(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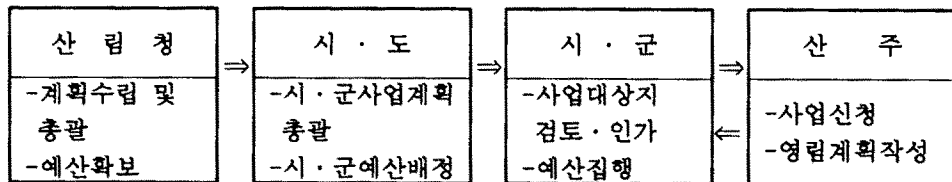
다. 자금지원 예정자

- '98 영림계획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및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산주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
 - 영림계획 작성신고후 영림기술자나 임협에 위탁 작성
 - 영림기술자나 임협에 작성경비 지급

○ 사업비 지원방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영림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산주가 변상

나. 보고·기타

- 년 보
 - 영림계획 작성 사업계획 보고(총49-24)
 -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상황 보고(총49-31)
- 분기보
 - 영림계획 작성 진도 상황보고(총4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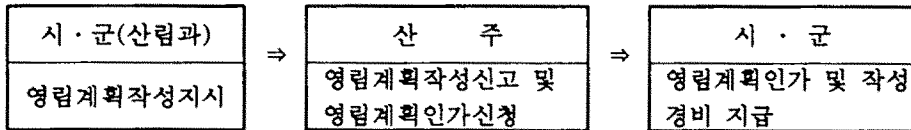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99 영림계획 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역내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영림계획작성 신고서 1부

【산림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임업진흥권역내 사유림을 우선하여 보조하되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위주로 보조대상자를 선정
 - 자력작성이 가능한 산주를 제외한 영세산주 산림을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영림계획미작성 및 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지원대상 산주선정, 영림계획작성지시(시·군)
 - 보조금 신청(산주)
 - 보조금 교부(시·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정과입니다.

1. 목 적

-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의 자립 운영체제 구축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조합 위주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 단체로 육성(전문조합 설립 및 지원)
- 임산물·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집하장, 직매장, 종합처리장)
-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개발(신용사업추진, 신규사업개발)
- 정부의 경상적 보조는 점차 줄여나가되 융자는 확대

3. 근거법령

-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정부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141조합	142조합	142조합	143조합		
사 업 비	계	21,557	5,862	8,622	13,232	
	보 조	4,212	976	991	616	
	기금용자	12,100	3,410	6,155	12,000	
	지 방 비	2,712	687	687	616	
	자 부 담	2,533	789	789	-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 조	조합운영비보조	143개조합	정상(73) 5,400천원 (국고 50%, 지방비 50%) 보통(51) 10,600천원 (국고 50%, 지방비 50%) 기초(19) 15,800천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청 → 시·도 → 시군 → 임협조합
임업진흥 기금용자	임산물유통시설 운영 자금, 조합자체사업, 작업단 운영, 전문조합 설립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 실행사업비 용자	143개조합	120억원 연리 3% 1년거치 1년상환	산림청 → 임협중 앙회 → 임협조합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보조:일반회계, 용자:임업진흥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3조합	13,232	12,616	616	12,000	616	-
○ 조합운영비	143조합	1,232	616	616	-	616	-
○ 임협육성	143조합	12,000	12,000	-	12,000	-	-

※ 용자조건 : 연리 3%, 1년거치후 1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임정과(02-961-2318)
- 임협중앙회 : 금융부(02-416-9421~2)

다. 대상자 선정

(1) 대출선정기준

- 민유립작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실행사업비
-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비
- 임산물직매장 시설·운영, 임산물공판·수매·수집 사업비
- 전문조합설립 기반 시설 사업비
- 목재주택 사업육성을 위한 국산재 구입비

(2) 대출선정절차(대출)

- 임업협동조합 및 임협중앙회 도지회사업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중앙회 직영사업은 산림청장과 협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 임 협 :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시·군 : 년 1회이상 점검·확인, 시·도에 보고
- 임 협 : 년 4회이상 읍지사업 추진상황을 중앙회에 보고, 중앙회는 종합하여 분기말 산림청에 보고(총민 49-1)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입니다.

1. 목 적

- 산림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농산촌소득 향상
-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제품개발 및 기능성 신물질 개발
- 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고부가가치 생산기술 개발
- 사유림 산주들의 임업기술 보급을 통한 산지의 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임업의 산업화, 실용화 기술개발
- 개발된 임업기술을 사유림 산주에게 보급하여 실용화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 주체별로 지정하여 경영 책임지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실시)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원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및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액)	'99	2000~2004
사업량	-일반연구(제목)	682	83	91	94		
	·임업시험연구	459	55	59	60		
	·임목육종연구	223	28	32	34		
	-특정연구(제목)	22	6	4	4		
	-지도원 급여 지원 등(명)	(787)	(787)	(787)	(787)		
사업비	계	76,846	18,472	18,650	21,713		
사업비	-연구개발비	54,321	11,645	11,598	14,229		
	·보 조	54,321	11,645	11,598	14,229		
	-기술보급비	22,525	6,827	7,052	7,484		
	·보 조	17,852	5,412	5,628	5,989		
	·자부담	4,673	1,415	1,424	1,495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개 요

○ 일반연구

- 임업시험연구

-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 유지·증진 및 임업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임산자원의 고도이용과 단기임산소득원 개발 및 임업경제구조·제도개선
- 주요향토 경제수종 및 유실수의 신품종 육성
- 우량 신품종 대량증식 기술 및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물질 개발

○ 특정연구

- 임산자원의 발굴·이용 기술

- 농산촌의 소득과 연계된 산촌개발사업 연구등

○기술보급

- 임협에 배치된 기술지도원 급여 및 기술지도 장비구입비 지원
- 임업기술 홍보자료 발간비 지원

(2)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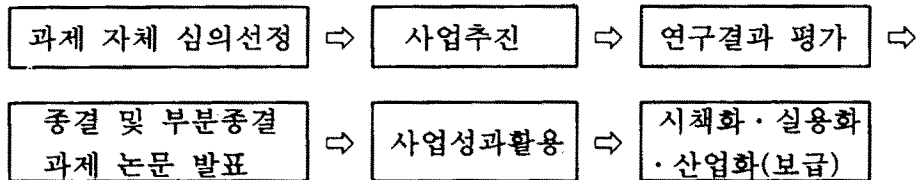
- 일반 및 특정연구 : 산·학·연·관·민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 및 소속 연구기관
- 기술보급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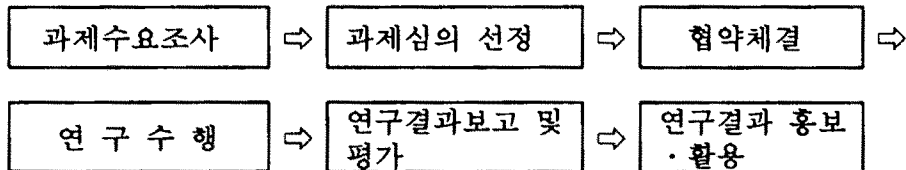
- 일반 및 특정연구 : 전액 국고
- 기술보급
 - 임업기술지도원 급여지원(787명) : 국고 80%, 자력 20%
 - 임업기술지도장비(지프차 : 조합당 1대, P.C : 지도원 1인당 1대) 및 산림지 발간비(연 276천부)지원 : 국고 70%, 자력 30%

(4)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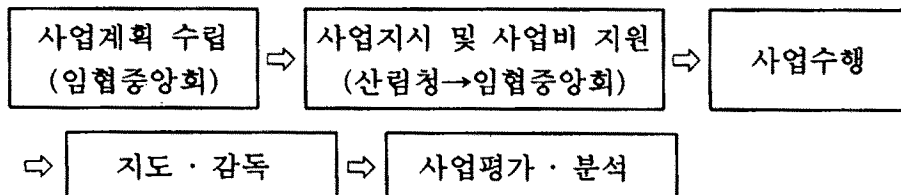
○일반연구(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특정연구(산림청)



○기술보급(산림청, 임협중앙회)



(5)사업신청

○ 신청자격

- 일반연구 : 소속연구기관(자체사업)
- 특정연구 : 산·학·관·연·민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 및 연구기관

○ 신청절차

- 일반연구 : 소속연구기관 자체 연구과제 선정 추진
- 특정연구 : 연구기관·출연기관·단체등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특정연구 : 임업기술개발계획서

나.'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계		22,013	20,518	20,518	-	1,495	
기술 개발	-일반연구	94과제	14,229	14,229	14,229	-	-
	·임업시험	60	8,200	8,200	8,200	-	-
	·임목육종	34	6,029	6,029	6,029	-	-
	-특정연구	4과제	300	300	300	-	-
	소 계	98과제	14,529	14,529	14,529	-	-
기술 보급	-「한국의명산」 발간	3,000부	99	99	99	-	-
	-지도원급여	787명	6,827	5,499	5,499	-	1,328
	-장비지원(지프차)	30대	410	287	287	-	123
	-산림지발간	23천부/월	148	104	104	-	44
	소 계	-	7,484	5,989	5,989	-	1,495

<추진체계>

가.사업주관기관

- 임업기술개발 : 산림청(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임업기술보급 : 산림청(임협중앙회, 임업협동조합)

나.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기술지원과 (02-961-2374~5)
- 임업연구원 : 기획과 (02-961-2522~3)
- 임목육종연구소 : 육종과 기획실(0331-290-1142~3)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416-9419~20)
- 시·군 자치구 : 임업협동조합

다.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일반연구 : 임업의 산업화,산지이용의 합리화등 산림시책추진과의 연계성
 - 특정연구 : 현장적용성, 산업화 가능성등
- 선정절차
 - 일반연구 : 임업연구기관 자체심의 선정
 - 특정연구 : 공모과제를 대상으로 임업기술개발심의회에서 심의선정

라.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일반연구 : 자체 선정된 과제설계서를 작성하여 임업연구 기관에서 심의 선정
 - 특정연구 : 임업기술개발 심의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주관 연구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업시행
 - 임업기술보급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업기술지도원의 연간 지도 활동계획 수립
- 사업비 지원방법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 산림청장 : 보조금 교부결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산림청장 : 보조금의 금액확정(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행정사항>

가.사후관리

- 연구성과 보고서를 유인하여 학계, 단체, 임협,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에게 배부 및 전산처리
- 임협중앙회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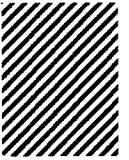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고
	부 터	까 지		
지프차	취득일	6년		조달청 고시 제6호 물품 내용연수 적용
P . C	"	5년		

나.보고

- 임업기술보급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총공통-9)

여 백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여 백

I.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임산소득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원 개발 촉진 및 생산자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재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생산경쟁력 제고
- 밤 생산·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계화 기반시설 확충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임업진흥촉진법 제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표고생산기반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	-	-	-		
사 업 비	계	32,064	18,476	29,854	36,323	
	보 조	1,373	2,752	4,173	7,178	
	용 자	19,242	6,511	11,160	11,033	
	지방비	-	2,752	4,173	5,793	
	자부담	11,449	6,461	10,348	12,319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8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나. 임산물 산지재배(생산) 및 생산장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개소)	72	29	65	70		
사 업 비	계	715	286	649	798	
	용 자	500	200	454	558	
	자부담	215	86	195	240	

다. 밤 작업로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97이전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km)	-	600		
사업비	계	1,800		
	보조	540		
	용자	540		
	지방비	540		
	자부담	180		

라.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7이전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개소)	-	50		
사업비	계	500		
	보조	100		
	지방비	100		
	자부담	300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표고생산자금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자목·툽밥배지·종균 등 표고생산 재료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2년상환
- 용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 이내)
- 용자단가
 - 자목1m²당(또는 툽밥배지100개, 종균100kg) : 112천원(기준단가 160천원의 70%)

(2) 표고재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원목재배·톱밥균상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등 재배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톱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고보조한도액 : 50백만원 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단가
 - 비닐하우스 시설 : m²당 6,600원(기준단가 22,000원의 30%)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철골온실·톱밥균상재배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3)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원목재배단지화를 위한 재배시설, 저장시설, 선별·포장기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재배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장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선별·포장기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1개단지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100,000	277,800	141,800	277,800	402,600
○ 재배시설	1단지	726,000	217,800	-	217,800	290,4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90,000	60,000	90,0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세부사업별 단가는 상기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표고톱밥균상 재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톱밥균상재배단지화를 위한 배지생산시설, 재배자금, 저장시설, 선별·포장기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톱밥배지생산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장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톱밥균상재배자금, 선별·포장기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1개단지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500,000	360,000	230,000	360,000	550,000
○ 톱밥배지생산 시설	1시설	1,000,000	300,000	-	300,000	400,0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90,000	60,000	90,000
○ 톱밥균상재배 자금	1단지	126,000	-	88,200	-	37,8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세부사업별 단가는 상기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사업내용 : 전문조합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유통·가공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1,000백만원 이내

(6) 표고종균생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784,860천원 이내

(7) 임산물산지재배·생산

- 사업내용 : 산나물·산약초·산과실 산지재배, 송이생산환경개선 확대를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8)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 사업내용 : 밤수집기, 약제살포기, 간벌목분쇄기, 표고자동천공기 등 생산장비 구입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대당 10백만원 이내

(9) 밤작업로시설

- 사업내용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퍽 2m내외의 작업로를 토공사 위주로 시설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 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현실단비(설계단비)를 지원하되 km당 3,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10)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 사업내용 : 산림청에서 제정·고시한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라 규격출하하는 포장자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규격출하를 하는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계	-	39,421	19,949	7,818	12,131	6,433	13,039
<표고생산기반조성>	-	36,323	18,211	7,178	11,033	5,793	12,319
○ 표고생산자금지원	296개소	14,218	9,952	-	9,952	-	4,266
○ 표고재배시설	168개소	11,220	3,366	3,366	-	3,366	4,488
○ 원목재배단지조성	6단지	6,600	2,518	1,667	851	1,667	2,415
- 재배시설	6단지	4,356	1,307	1,307	-	1,307	1,742
- 저장시설	6개소	1,800	900	360	540	360	540
- 선별·포장기	6조	444	311	-	311	-	133
○ 톱밥균상재배단지 조성	1단지	1,500	590	360	230	360	550
- 톱밥배지생산시설	1시설	1,000	300	300	-	300	400
- 저장시설	1개소	300	150	60	90	60	90
- 톱밥균상재배자금	1단지	126	88	-	88	-	38
- 선별·포장기	1조	74	52	-	52	-	22
○ 표고전문조합 유통시설지원	1개소	2,000	1,000	1,000	-	400	600
○ 표고중균생산시설	1개소	785	785	785	-	-	-
<단기소득임산물생산>	-	3,098	1,738	640	1,098	640	720
○ 임산물산지재배· 생산	25개소	700	490	-	490	-	210
○ 생산장비지원	10대	98	68	-	68	-	30
○ 밤작업로시설	600km	1,800	1,080	540	540	540	180
○ 임산물표준규격 출하지원	50개소	500	100	100	-	100	30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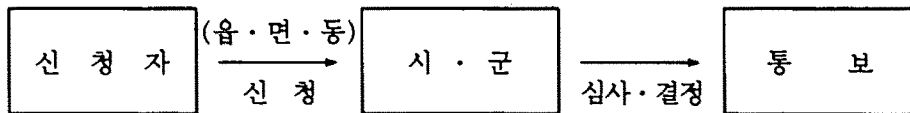
※ '98 신규계획된 표고튕밥균상재배단지조성,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밤작업로시설,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임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1) 튕밥균상재배단지조성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2)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 (3)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4)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써 밤생산·관리의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지방도, 농로, 임도 등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재배지
- (5)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 임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 표고튕밥균상 재배단지 조성
 - ①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② 생산량이 많은 법인경영체

(2)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

- ① 조합원이 다수인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 ② 생산량이 많은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3)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밤작업로시설 : 5ha이상 밤나무 재배지로서 자부담 10% 부담능력자

(5)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 ① 주산단지내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다만, 표고종균생산시설사업은 임협중앙회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02-961-2364)
- 시·도 : 산림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 임협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

다. 자금지원예정자

- (1) 표고톱밥균상 재배단지 조성 : 경기도 포천버섯개발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
- (2)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전라북도 전북표고임업협동조합
-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인 사업은 기재 생략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 밤작업로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대출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임산물표준출하사업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공급실적(제작수량 등)에 대한 증빙서(포장재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자금요청
 - 시·군에서는 사업자별 포장재 공급(제작) 확인에 따라 자금집행,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 사실여부 조사
 - 사업자는 포장재 제작시 표시사항 등을 시·군과 사전에 협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대출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표고재배시설	'98년도	2002년도	4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준용
툼밤배지생산시설	'98년도	2008년도	10년간	
저장시설	"	"	"	
유통시설	"	"	"	
중균생산시설	"	"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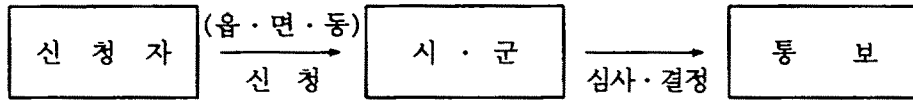
- (1) 표고생산자금지원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2) 표고재배시설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3)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4) 표고툽밥균상 재배단지 조성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5)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 (6) 표고종균생산시설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7) 임산물산지재배·생산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8)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9)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밤 생산·관리의 기계화에 필요한 노퍽 2m내외의 작업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지방도, 농로, 임도 등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 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재배지
- (10)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 임산물을 규격출하하는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1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1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표고생산자금지원, 표고재배시설

※ 법인경영체의 경우 다음의 ①~⑤순위의 재배자가 다수로 구성된 법인순으로 선정

- ①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③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④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⑤ 기타 표고재배자(주산단지이외지역의 표고재배자에 대한 우선순위도 상기 ①~④ 순위적용)

(2)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 표고톱밥균상 재배단지 조성

- ①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② 생산량이 많은 법인경영체

(3) 표고전문조합유통시설

- ① 조합원이 많은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 ② 생산량이 많은 표고전문임업협동조합

(4) 표고종균생산시설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5) 임산물산지재배·생산,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6) 밤작업로시설 : 5ha이상 밤나무 재배지로서, 자부담 10%부담 능력자

(7)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 ① 주산단지내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② 기타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II. 조경수 · 분재소재생산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입니다

1. 목 적

- 조경수 및 분재소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한 조경수 및 분재소재를 생산함은 물론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 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융자지원
- 농어촌발전계획 및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지역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ha)	계	477	195	250 (1개소)	269.5			
	조 경 수	290	135	180	199.5			
	분 재	187	60	70 (1개소)	70			
사업비 (백만원)	계	31,231	14,263	20,033	19,762			
		조 경 수	19,300	9,863	13,200	14,629		
		분 재	11,931	4,400	6,833	5,133		
	용 자	계	21,862	9,984	14,023	13,833		
		조경수	13,510	6,904	9,240	10,240		
		분 재	8,352	3,080	4,783	3,593		
	자 부 담	계	9,369	4,279	6,010	5,929		
		조경수	5,790	2,959	3,960	4,389		
		분 재	3,579	1,320	2,050	1,540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UR대체 작목으로 육성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수급정책에도
원활을 기여

(2) 지원대상자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업 종사자

(3) 지원단가 : 73,330천원/ha

(4) 지원조건

- 조 경 수 생 산 :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 분재소재생 산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69.5	19,762	13,833	-	13,833	-	5,929
- 조 경 수	199.5	14,629	10,240	-	10,240	-	4,389
- 분재소재	70	5,133	3,593	-	3,593	-	1,540

< 추진 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 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02-961-2356)
-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농정,산업경제)국·녹지(산림)과
- 시·군자치구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대상자 선정

- 한국조경수협회 회원은 협회장,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조합장의 추천(생산 확인)을 받은 자
-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임업협동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 자

(2)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m²이상을 소유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용자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 자
- 동 사업에 대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자

(3) 선정절차

신청 → 심사결정 → 심의 및 예산요구 → 사업심의, 예산확보, 시·도배정
(추천을 받은자) (시·군농어촌 발전심의회) (시·도농어촌 발전심의회) (산 립 청)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해당 시군 산림과·녹지과에 접수하여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한도 [조경수 생산 : 1인당 100백만원이내
 [분재소재생산 : 1인당 50백만원이내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조 경 수 : 금리 연 5% (3년거치 5년상환)
 [분재소재 : 금리 연 5% (3년거치 7년상환)

마. 기 타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 : 현지 심사후 자금집행

<별지 제1호서식>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금 용자신청서

신청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명					
생산자금 (천원)	내역				
	계	용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생산기반시설	내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m'	동,	m'	대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최종학력	년 월 학교 (졸업, 중퇴, 수료)				
영농교육 이수사항	기간		교육분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용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임산물 이용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 임산물의 가공·이용 시설확대로 이용도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 국산원자재 구입 촉진으로 국산재 이용을 제고와 산주 소득증대
-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출하시기조절 및 상품가치 보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각종 지원의 규모화 추진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 산지가공공장은 주요 산별 시범단지 소재 시·군의 간벌재 등 이용촉진과 주산단지 시·군의 단기소득임산물 가공공장 지원 주력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원자재로 구입코자 하는 자에 대한 확대 지원으로 국산 원자재 이용촉진
- 저온·냉동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유통구조개선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10조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목재 이용가공 및 원자재 구입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570개소	189개소	58개소 (75천m ²)	35개소 (130천m ²)		
사 업 비	계	54,751	21,066	26,245	24,476		
	용 자	38,326	14,746	18,372	17,133		
	자부담	16,425	6,320	7,873	7,343		

나. 단기소득임산물가공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개소)		-	1	1	6		
사 업 비	계	-	1,429	96	3,600		
	보 조	-	-	-	360		
	용 자	-	1,000	67	1,920		
	지방비	-	-	-	360		
	자부담	-	429	29	960		

다. 임산물저장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개소)		32	24	12	15		
사 업 비	계	9,609	7,244	4,800	4,500		
	보 조	1,072	1,002	960	900		
	용 자	4,224	1,301	1,440	1,350		
	지방비	-	1,002	960	900		
	자부담	4,313	2,896	1,440	1,35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목재이용가공시설, 원자재구입자금

(가) 지원대상자

○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포함)로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와
-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산지 가공공장은 전국 주요 산별 시범단지 소재 시·군 및 임업진흥권역 소재 시·군에 간벌재 등 목재 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거나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공장을 설치코자 하는 자로서 전기 요건을 갖춘 자

○ 원자재 구입자금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포함)로서 국내산 임산물 원자재를 구입코자 하는 자

(나) 지원단가

-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 사업별 내용과 같음
- 원자재 구입자금 : 원목의 경우 m³당 58,100원(용자기준원목가 : 83,000원/m³의 70%)
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구입금액의 70%까지 지원가능

(다) 지원조건

○ 입산물 이용가공시설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용자(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한도액 : 개소당 설계금액의 70% 이내
- 용자금리 : 연리 5% - 산주, 농특회계 대출사업 집행지침상 별도요건을 구비한 법인, 공익법인
연리 8% - 비산주로서 연리 5%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원자재 구입자금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용자(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한도액 :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 다만, 목재의 경우 원목기준 연간 5,000㎡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 용자계획 금액의 50%를 1인당 3억원이내에서 우선 용자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시·군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경우 5,000㎡ 이상 사용자는 연간 3억원이내에서 중복결정 가능)
- 용자금리 : 연리 5.5%
- 용자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2) 단기소득입산물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밤, 표고, 대추 등 단기소득입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입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용자한도액·용자단가 : 420백만원(기준단가 600백만원의 70%)을 기준으로 용자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3) 밤박피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밤박피 등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회원 100인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용자한도액·단가 : 300백만원(국고보조 180백만원, 국고용자 12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4) 임산물저장시설

- 사업내용 : 밥, 표고, 대추, 송이,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냉동·저온저장에 필요한 시설(판넬조립식포함)·기계·장비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10년상환
- 국고보조·융자한도액·단가 : 150백만원(국고보조 60백만원, 국고융자 9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단 비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 담
				계	보조	용 자		
계	개소		32,576	21,663	1,260	20,403	1,260	9,653
○ 칩가공시설	2	200	400	280	-	280	-	120
○ 통나무가공시설	5	300	1,500	1,050	-	1,050	-	450
○ 제재시설	20	200	4,000	2,800	-	2,800	-	1,200
○ 목각생산등 가공시설	4	194	1,000	700	-	700	-	300
○ 산지가공공장 설치	2	1,293	2,086	1,460	-	1,460	-	626
○ 목재부산물 이용 유기질비료 생산 시설	1	143	1,000	700	-	700	-	300
○ 목탄·목초액 축탕가공시설	-	-	3,700	2,590	-	2,590	-	1,110
○ 임산물원자재 구입	130천m ³	0.083	10,790	7,553	-	7,553	-	3,237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4	600	2,400	1,680	-	1,680	-	720
○ 밤박피가공시설	2	600	1,200	600	360	240	360	240
○ 임산물저장시설	15	300	4,500	2,250	900	1,350	900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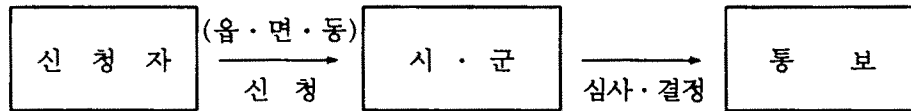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98 신규사업인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밤 박피 가공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밤 박피 가공시설 : 회원 100인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밤 박피 가공공장
 - ① 연간 밤 생산량이 1천톤이상인 법인경영체
 - ② 수출위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경영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02-961-2324)
- 시·도 : 산림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밤 박피 가공시설 : 부여 밤영농조합법인, 광양임업협동조합
- 지원 우선순위
 - 임산물이용가공시설
 - ① 노후화된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②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 산지가공공장
 - ① 간벌재 등 목재의 가공·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②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협동조직으로서 가공·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원자재 구입자금
 - ① 국내산 목재를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 ② 국내산 단기소득임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 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밤박피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98년도 "	2018년도 "	10년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준용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98년도 사업실시요령 지원대상자와 같음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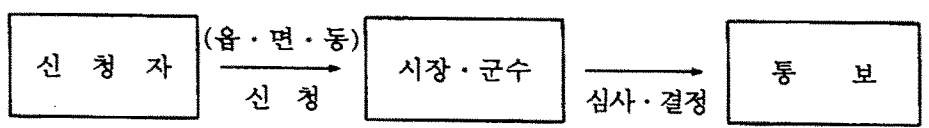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 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임산물이용가공시설·원자재구입자금 : '98년도 「추진체계」 자금지원 예정자 지원 우선순위와 같음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밤 박피가공공장
 - ① 연간 밤 생산량이 1천톤이상인 법인경영체
 - ② 수출위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저장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87	임산물 생산자단체 회원조합육성(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의 조직화 및 조직의 활성화 유도
-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개소)		-	-	-	60		
사 업 비	계	55,233	21,159	27,975	37,500		
	용 자	44,186	16,927	22,380	30,000		
	자부담	11,047	4,232	5,595	7,500		

※ '92~'97년은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출하조절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임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85~'97 지원하여온 출하조절사업, '95~'97 지원하여온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사업을 본 사업으로 통합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금 리 : 연리 5%
 - 기 간 : 1년이내
- 용자한도액 : 2,000백만원이내
- 용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원종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산지 유통·생산시설 및 장비구입비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임산물 생산자단체 회원조합육성	60개소	37,500	30,000	-	30,000	-	7,5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임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 임업협동조합
 - 중앙회 금융부(02-416-9421)
 - 도지회 관리과(지도검사과)
 - 시·군 임업협동조합 금융과(지도과)

다. 사업시행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임업협동조합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 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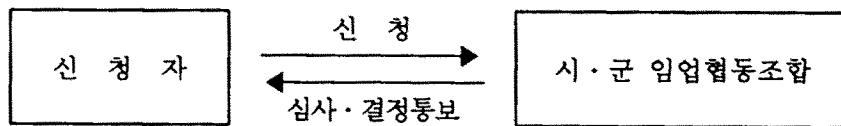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5) 신청시기 : '98. 1. 1~1. 31

(6)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7) 구비서류 : 임산물생산자단체회원조합육성 사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8)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라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③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④ 기타 법인경영체

(9) 사업시행요령

- 법인경영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8. 1. 31까지 시·군 입업협동조합에 제출
- 시·군 입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98. 2. 10까지 임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임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98.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임협중앙회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입업협동조합 : 대출금 사후관리
- 임협중앙회 : 법인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나. 보고·기타

- 임협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히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신청시기는 '99. 1. 1~1. 31까지임

【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생산자단체 회원조합육성 사업신청서

1. 조직현황

법인경영체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설립법적근거		
조합원수			출자금액	천원	
시설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기타
	m'	m'	대		
재배현황	구분	품목			
		면적(ha,m')			
		생산량(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부담	

199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88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산지(產地)와 소비지를 직결하는 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 소득향상과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확대 설치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산물 안정공급을 위한 유통시설의 확대설치로 유통체계화 기반 구축
- 임산물종합유통센타의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 보완 및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간벌·소경재 수집·운반·가공장비 지원으로 국산재 생산·이용촉진 도모
- 수출시 장기간 운송에 따른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가치 보존을 위한 포장자재의 고급화 유도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43	13	15	15		
사 업 비	계	22,194	2,823	6,668	9,056		
	보 조	6,052	1,976	3,334	4,528		
	지방비	-	-	1,334	1,811		
	자부담	16,142	847	2,000	2,717		

나. 유통·가공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사업비	계	6,549	12,414	9,150	7,534	
	보조	4,201	11,942	1,258	4,888	
	용자	1,308	-	5,284	1,680	
	자부담	1,040	472	2,608	966	

다. 우수임산물수출촉진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93~'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톤)	6	2	-	19,600		
사업비	계	339	113	113	1,000	
	보조	237	79	79	500	
	지방비	-	-	-	-	
	자부담	102	34	34	500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 사업내용 : 임산물직매장 및 목재종합집하장 설치
- 지원대상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규모 :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조합에서 결정
- 지원규모 : 유통시설 건물 건축비(목재종합집하장의 경우 부지매입비 포함)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30%

(2) 유통·가공지원사업

(가) 지원사업내용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
 -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
 -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개발비 및 전산설비 증설
- 간벌재 활용장비
 - 국산재 생산비 절감 및 이용도 제고에 필요한 수집·운반·가공장비 구입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
 - 유통정보 DB 구축 및 자동화시설 보완 : 국고보조 100%
 - 원목구입비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간벌재 활용장비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 이 자 율 : 연리5%

(3)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 사업내용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을 지원, 포장개선
- 지원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임업협동조합
- 사업규모 : 수출실적 및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
- 지원규모 : 수출용 포장재 및 물류비(국내·외 운송비, 선별비), 포장기계장비50%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50%, 자부담50%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7,590	11,596	9,916	1,680	1,811	4,183
○ 임산물유통시설 설치	15	9,056	4,528	4,528	-	1,811	2,717
- 임산물직매장	13	7,044	3,522	3,522	-	1,409	2,113
- 목재종합집하장	2	2,012	1,006	1,006	-	402	604
○ 유통·가공지원		7,534	6,568	4,888	1,680	-	966
- 임산물종합유통 센터 설치·운영		6,715	5,995	4,315	1,680	-	720
· 유통정보DB구축	3종	630	630	630	-	-	-
· 자동화시설보완	17종	3,685	3,685	3,685	-	-	-
· 원목구입	20천m'	2,400	1,680	-	1,680	-	720
- 간벌재 활용장비	8종	819	573	573	-	-	246
○ 우수임산물 수출 촉진사업	19,600톤	1,000	500	500	-	-	500

<추진체계>

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2)
- 시·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받은 입업협동조합 또는 입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세부시설계획(부지위치·면적, 건물면적·용도, 구입기계·장비명 등)과 시설공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지원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 변경, 사업자 변경 : 청장 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 변경, 사업자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산림청장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산림청장 → 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신청 : 조합장 → 시장·군수 → 도지사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 도지사 책임하에 검정 및 정산 실시
 - 당해연도 국고지원을 받는 지역은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총공통-9)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사업자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나. 유통·가공지원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2)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배경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규모, 구입장비명, 개발내용 및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 제출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민간자본보조)으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원

다.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02-961-2342)

(3) 사업시행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4) 대상자선정

(가) 선정기준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자
-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자
 -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자
 -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자

(나) 선정절차

- 일반공고→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지원금 배정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행정사항>

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

(1) 사후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이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 해당조합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도지사와 임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2)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유통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수시보고 가49-1)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수시보고 가49-2)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총공통-9)

나. 유통·가공지원

(1) 사후관리

- (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 또는 사업소에서 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나) 해당조합 또는 사업소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기계장비	구입일	7년간	"	

(2) 보고기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98. 12. 31까지 보조사업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총공통-9)

다.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점검 포함)
- 수출실적 점검 및 사업실적 평가후 차등 지원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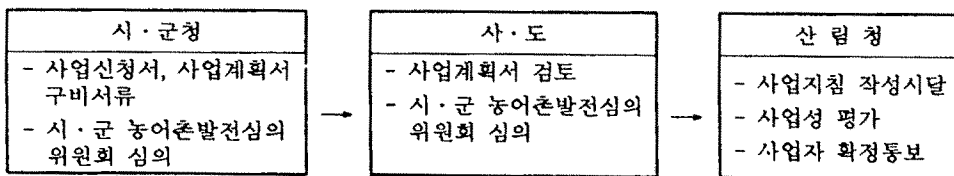
(2) 보고·기타

- 분기별 사업추진 결과 보고(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 연간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총공통-9)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2)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3) 신청절차



(4) 구비서류

(가)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5) 대상자 선정

(가) 선정대상자

○ 임산물직매장

- 임산물이 다량 생산되거나 수집·판매·알선 또는 소비촉진이 용이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단위의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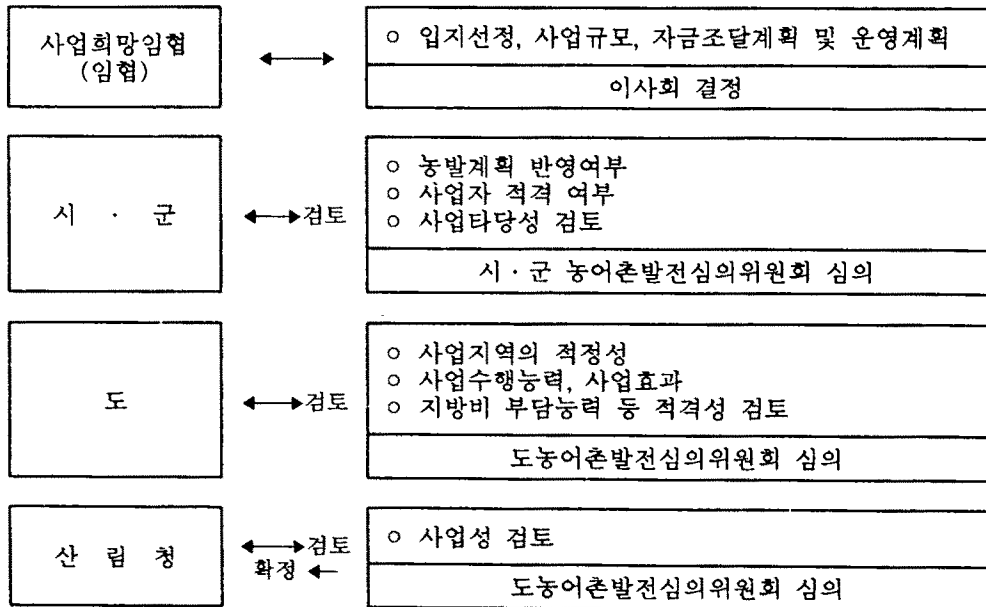
○ 목재집하장

- 목재유통의 거점지역으로 목재 보속생산이 가능하고 집하가 용이하며 목재소비자와의 교통이 편리한 시·군 임업협동조합

(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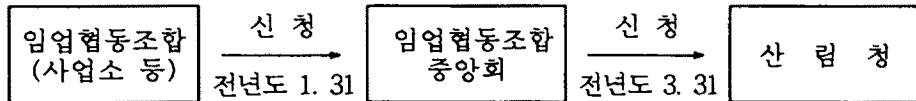
- 국고보조로 임산물직매장 또는 목재집하장이 설치되지 않은 조합으로서 부지를 기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결과 보조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
(원료확보방안, 시설운영계획, 판매계획 등)

(다) 선정절차



나. 유통·가공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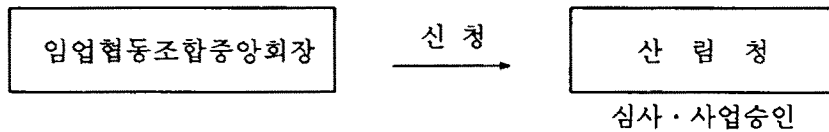
- (1)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3) 신청절차



-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사업효과, 운영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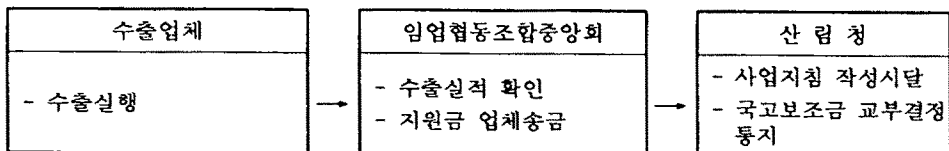
- (5) 대상자 선정
 - (가) 선정대상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선정절차



다.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 (1)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신청자격 : 임산물 과거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3) 구비서류 :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신청서 1부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도(시) 시(군·구) 구(읍·면) 동(리) 번지
 [위치약도(1/5,000축척지형도)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지 목 :

- * 위치선정 사유(주변현황 등)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 *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

나. 시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	단가 (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 담
○ 임산물직매장 - 창고 및 부대시설 - 판매장 - 전시장						
○ 목재종합집하장 - 시설부지 - 관리자 - 기계장비						

- ※ 재원조달계획중 자담분에 대하여는 적립금 예치등 증빙자료 첨부
- ※ 건물 평면도(1/300) 첨부

다. 추진일정

- 부지확보 완료 :
- 기초 및 실시설계 완료 :
- 착공 및 준공 :

5. 주요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량(과거 5개년)

(단위 : 톤)

구 분						
품 목 명	생 산 량					
	유통 량					

6. 취급예정물량 및 금액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1 일 평 균		연 평 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7. 연차별 수지전망(손익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년 도					
수 익					
비 용					
순 손 익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49-1

임산물유통시설 공사추진 상황보고

시설명 :

설치장소 : (부지 : m²)

'98 시설계획

구 분	시설규모	사업비 부담내역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창고 및 부대시설 판매장 전시장						

시설공사 추진상황(○/○분기)

○ 공사진도 : %

○ 일정별 추진상황

- 설 계 완 료 :

- 건 축 허 가 취 득 :

- 공 사 착 공 :

- 기초 터파기 공사중 :

※ ()내는 추진일자를 기입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		2/4		3/4		4/4	
			%		%		%		%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3호서식】

자체 가49-2

임산물유통시설 운영실적 보고

I. 운영실적 총괄

○ 유통시설별 사업별 판매금액, 조수입 등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유통시설별	설치장소	사업별	'96 실적		'97 실적		대비(%)	
			판매금액	조수입	판매금액	조수입	판매금액	조수입

II. 운영실태 분석평가

III.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IV. 운영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대책

【별지제4호서식】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원 신청서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 조합, 개인			설립일자	
업 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주요 경영진 경력사항(2-3인)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년도 수출촉진사업 지원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998. . . .

신청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별표1양식)
 2.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신청서(별표2양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5. 수출신용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

「별표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수출 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 량	금 액	1/4	2/4	3/4	4/4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수출 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 량	금 액	1/4	2/4	3/4	4/4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수출 실적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선적기한	

「별표2」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원 신청서('98. 분기)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		전화		FAX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 신청내역

품 목	HS분류 번호	수출 실적		수출기간	물 류 비				신청액
		물 량	금 액		포장재	운송비	선별비	계	

위와 같이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1998.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 붙임 1. 수출면장(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1부.
2. 포장재 제작 사양서 1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노후된 합판 또는 보드류시설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국내재 이용확대로 산주 소득증대 및 관련산업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남양재 활엽수 합판 생산시설을 침엽수 병용 합판 생산시설로 교체하여 경쟁력 향상
-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국산재 이용을 확대 및 수급안정 도모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10조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9	4	5	2		
사 업 비	계	33,630	10,329	17,143	14,286	
	용 자	23,541	7,230	12,000	10,000	
	자부담	10,089	3,099	5,143	4,286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합판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침엽수 합판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침엽수 등 합판 생산시설로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와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우선순위에 의함
 - ①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② 생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③ 생산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 ④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합판 또는 보드류 생산업체로서 한국합판공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업체도 포함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시설금액의 70%이내
- 융자금리 : 연리 7%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단비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재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합판 및 보드류시설	2개소	7,143	14,286	10,000	10,000	-	4,28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02-961-2324)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지원대상자자격을 가진 합판 또는 보드류 생산업체로서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원신청한 업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한국합판공업협회장 :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자격 :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와 같음

나. 신청절차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전년도 8월 31일까지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게 제출
-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은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다. 구비서류

- 합판·보드류시설 지원신청서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단, 서식중 다음과 같이 함
 - ○○(시장·군수·자치구청장)귀하 → 산림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첨1) 1부,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4호서식 : 제9조 제4항 관련) 1부.

[별첨 1]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 - - - - 관련자료는 첨부

1. 시설계획 개요(설치위치, 1일 및 연간생산능력, 원자재별 사용량, 가동예정일)
2. 생산시설 현황
3. 사업운영 실적
 - 년도별 합관 및 보드류 생산실적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4. 시설 설치계획(지원희망, 시설만 기재)

생산공정명	기계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 액			비 고
					계	용 자	자부담	

- 기계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기계명”란에 “시설명”을 “수량”란에 “시설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교체, 신설, 증설여부를 기여
- ※ 동 내역은 은행에 통보되어 대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5. 월별 자금투자 계획
6.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7. 시설 설치 투자효과 분석
8. 법인개요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정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여 백

Ⅲ. 인 력 육 성



여 백

9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입니다.

1. 목 적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임업인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선발
-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임업경영실적의 철저한 사후관리

3. 근거법령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액)	'99	2000~2004
사업량	계	263명	125	190	200		
	독립가	112	50	90	100		
	임업후계자	151	75	100	100		
사업비	계	10,297	3,000	4,700	10,000		
	보조	-	-	-	-		
	기금융자	10,297	3,000	4,700	10,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 -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산림경영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독립가인정절차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독립가로 인정된 자와
임업후계자선발및육성에 관한규정에 의거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예산액(임업진흥기금)				
			계	보조	융자		
계	200명	10,000	10,000	-	10,000	-	-
독립가육성자금	100	5,000	5,000	-	5,000	-	-
임업후계자육성자금	100	5,000	5,000	-	5,000	-	-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2-961-237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416-9419~20)
- 시 · 도 : 농정국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각 도지회
- 시 · 군 : 산림과, 임업협동조합

다.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규모 : 100억원(독립가 50, 임업후계자 50)
- 지원조건
 - 융자한도액 : 독립가는 3억원(30백만원까지 신용대출)
임업후계자는 1억원(30백만원까지 신용대출)
 - 융자조건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인정·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독립가 실태조사서, 임업후계자 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산림경영 실적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 임업협동조합장과 협조하여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별로 산림공무원 1명과 임업기술지도원 1명을 전담지도원으로 지명하여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게 정부산림 시책홍보와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담당 하도록 함
- 임업기술지도원과 지도담당공무원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와 수시로 접촉 하여 산림경영실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단위 임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및 내용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로 인정 또는 선발된 자가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자재구입비와 임야매입자금, 관리인인건비등

다. 구비서류

- 자율사업 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 임업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독립가 인정요건

독립가구분	인 정 요 건		인정권자
개인	모범	소유산림 3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 이상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 1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 용재림 50ha 이상, 유실수 20ha 이상	시·도지사
	자영	소유산림 5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 용재림 20ha 이상, 유실수 10ha 이상	시장·군수
법인	소유산림 5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300ha 이상		산림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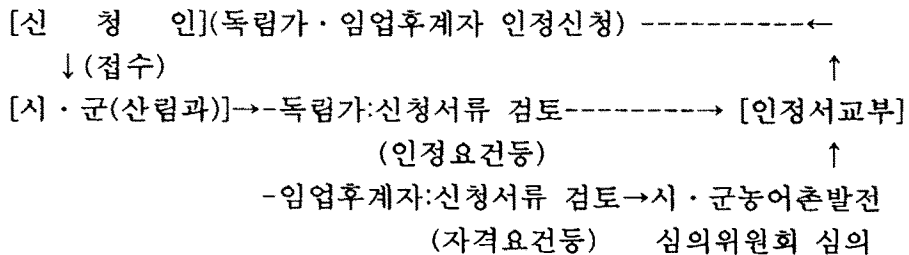
○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선발권자 : 시장·군수

-대 상 자 : 45세미만의 자로서 소유산림(사유림)이 소재하는 시·도안에
주소를 두고 산림을 경영하려는 자중 아래사항 해당자

- 독립가의 자녀
- 10ha 이상 산림소유자
- 10ha 이상의 국·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을 설정하여 경영하고 있는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5ha 이상의 산림소유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소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인정 및 선발절차



※구비서류

- 독립가 : 독립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소유산림경영내역서
-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선정절차(자금음자)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인정 및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함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협회장 추천 경우

[산 립 청]

자	↑	실	지	자
금		적	침	금
신		보	시	영
청		고	달	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상호 협 조 → [시 · 도]

(도 지 회)	음자실적	통보→	지		협
자	↑	실	지		조
금		적	침		요
신		보	시		청
청		고	달		달
					↓

[임업협동조합] ← 상호 협 조 → [시 · 군]

음	↑	결	대	음자실적	통보 →
자		정			
신		통			
청		보	출	추천	

[사업자(음자대상자)] ← [독립가및임업후계자협회장]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입업후계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 진 (반명합판)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과, 전공		졸업등	졸업년월일	
사업분야	(목재생산, 버섯재배, 관상수재배, 복합입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산림경영 규모 등	소재지 : 시도 시·군 면 리 산 번지의 필지 총면적 : ha (본인소유 : ha, 기타 : ha) 기타사업규모 :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주요경력 (자격증, 포상,교육 훈련등의 주요경력)	일자 또는 기간		내용			비고
<p>본인은 입업진흥촉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업후계자선발및육성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입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입업진흥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별지 제3호서식]

임업진흥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 부 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음자	자담	보조	

1997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 가. 소유권 확인서 1부.
- 나. 사업계획서(시설공사에 한함) 1부.
- 다.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I. 임업전문인력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
- 임업기능인작업단(영림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국가기술자격(영림기능사)을 갖춘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보조지원
- 목가공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훈련으로 농외소득증대
- 기계훈련원의 시설 및 교육능력 보강으로 현장 임업전문경영·기술인력 양성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등)
-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15조(임업기능인 양성)
-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
- 임업진흥촉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 임업기능인 훈련

(단위: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 업 비	계	2,379	1,569	1,163	1,937		
	보 조	2,379	1,569	1,163	1,937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백만원)

구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112단 (1,344명)	31단 (372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사 업 비 (백 만 원)	계	2,582	474	566	566		
	보 조	2,582	474	566	566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업기능인 훈련

○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산림은 녹화기를 지나 육림 및 경영단계에 도달함으로써 과거 단순녹화위주의 임업노동에서 질적수준이 높은 기술임업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공동화로 임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아니라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계를 조작·운용하는 전문기능인이 필요함에 따라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임업기능인훈련사업비 지원(영림단의 신규 및 보수훈련)
-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임업기계훈련원(강릉) 보강 : 시설보강(기숙사 신축, 식당 개보수), 장비확충, 교육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강릉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

○ 지원조건: 국고보조

(2) 영림단 장비지원

-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시·군 임업협동조합
- 지원대상자 : 신규 영림단

○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량 : ('96) 202단 3,484명 → (2010) 763단 9,150명
- 장비지원내용 : 1담당 12명 기준

기계톱	플낙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원 치	차량	무전기	무욕도구	안전장비
6대	4대	4대	4대	1대	1대	3대	12조	12조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임업기능인 훈련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일 반 회 계			농 특 회 계				
			소계	보조	용자	소계	보조	용자		
계	3개소	1,937	1,194	1,194	-	743	743	-	-	-
강릉 훈련원	소 계		1,601	858	858	-	-	-	-	-
	인 건 비	32인	367	367	367	-	-	-	-	-
	경상비 및 훈련사업비		313	267	267	-	46	46	-	-
	시설보강	2동	546	-	-	-	546	546		
	교육훈련장비 확충	3종	375	224	224	-	151	151	-	-
양산· 진안 임업 훈련원	소 계		336	336	336	-	-	-	-	-
	인 건 비	10인	93	93	93	-	-	-	-	-
	경상비및훈련 사업비		212	212	212	-	-	-	-	-
	목가공교육 기계구입	15대	31	31	31	-	-	-	-	-

(2)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30단 (360명)	566	566	566	-	-	-
민유림 영림단 증 설	30단 (360명)	566	566	56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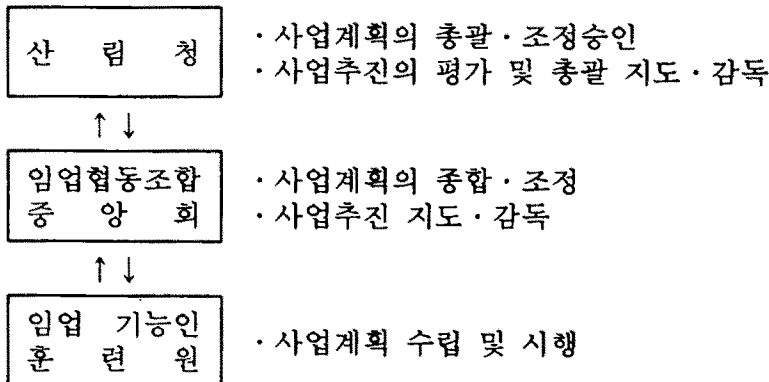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 (02-961-2415)

다. 사업시행체계

(1) 임업기능인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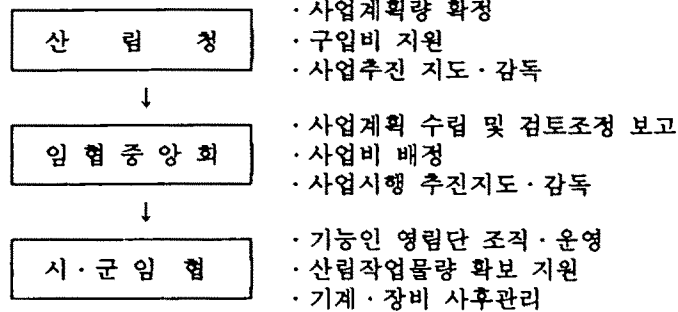


(2) 영림단 장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임업협동조합

- 사업 추진



- 지원형태 및 수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기 준 : 국고 100%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으로부터 '98년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7. 11. 30일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다(임업기계훈련원위탁·관리규정 제17조제3항, 별지제1호서식).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임업기계훈련원위탁·관리규정 제17조제4항).

○ 사업비 지원방법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림단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보고(총공통-9)

II. 임도시공장비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 입니다.

1. 목 적

- 임도시설 등 특수산림토목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에 임도시공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을 산림토목사업의 전문실행 조직으로 육성
- 산림사업의 전문화 기계화를 통한 산지자원화 촉진을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 견고한 임도시공으로 산림재해 및 안전사고예방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대,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104	38	47	33		
사	계	3,365	2,796	2,796	2,796	
	보 조	3,338	2,796	2,796	2,796	
업	음 자	-	-	-	-	-
	비	-	-	-	-	-
자부담	27	-	-	-	-	-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임도시공장비지원 배경
 산림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토목사업에 필요한 임도시공장비를 임업협동조합 및 산림개발사업단에 굴삭기 지원
- 지원대상자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
- 지원규모
 - 임업협동조합 및 산림개발사업단에 임도시공에 필요한 굴삭기 1대씩
 연차적으로 지원
 · 시·군임협조합 141대 지원(1/조합당)
 · 산림개발사업단 24대 지원
- 지원조건
 전액국고보조로 지원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대,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3	2,796	2,796	2,796	-	-	-
임도시공장비지원	33	2,796	2,796	2,796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2) 961 ~ 2364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개발부 (02) 416 ~ 9418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선정기준
 - 민유임도를 시공하는 임업협동조합(서울, 울릉조합 제외)
 - 국유임도를 전담 시공하는 산림개발사업단
- 우선순위
 - 전년도 임도시공 실적이 많고 임도시공이 양호한 조합
 - 당해년도 임도시공물량이 많고 중기운전기사를 보유하거나 확보가능한 조합
 -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임도시공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합
- 선정절차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조합을 선정 연차적으로 지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1월 : 장비지원계획 수립
 - 2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 ~ 6월 : 장비구입 현지배치 완료
 - 7 ~ 12월 : 사업 실행
-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행 등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 립 청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
원에 예산 신청하여 소요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달
- 임협중앙회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신청
· 산림청 사업지시에 따라 장비구입 시 · 군임협조합에 배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장비운영 · 관리실태 지도감독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임도시공장비 (굴 삭 기)	구입년도	6년	임협중앙회회 계규정 및 법 인세법	

나. 보고 · 기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여 백

IV. 환 경 임 업 육 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 입니다.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제공 및 농산촌 지역사회 소득증대 도모
- 지역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과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및 학술연구를 통하여 산림문화 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휴양수요와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국민정서 순화
- 대국민 자연학습장화, 산림시책의 홍보장화
- 지역별 향토수종 등의 증식과 산림사료의 전시 등으로 특색있는 산림문화 공간의 정착

3. 근거법령

- 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법 제31조 ~ 제33조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운영지침(산림청예규 제429호)
-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 산림법 제34조 ~ 제34조의2
 - 수목원조성·관리운영지침(산림청 예규 제424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59	12	12	15		
사업비	계	63,963	17,531	23,208	26,020	
	보조	25,644	8,499	11,440	12,925	
	융자	12,110	1,120	1,260	1,320	
	지방비	22,217	7,432	9,968	11,209	
	자부담	3,992	480	540	566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자연휴양림

국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 편의시설설치 휴식공간 조성

- 박물관·수목원

향토수종 및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전전시 등을 통하여 산림문화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유림 자연휴양림(융자)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공유림 자연휴양림(보조)

시·도지사가 책임하여 선정

- 박물관·수목원

도별 또는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추진

○ 지원단가 및 조건

- 자연휴양림

- 신규 : 개소당 12억원을 2년간 분할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보완 : 개소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용자 : 12억원을 기준 70%까지 지원(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

- 박물관·수목원

- 박물관 : 총 80억 규모로 4년계획으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수목원 : 총 30억 규모로 4년계획으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설종류

- 자연휴양림 :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박물관 : 박물관, 내부전시물 및 각종 부대시설 등
- 지방수목원 : 전시원, 온실, 교육동, 관리사, 관찰로 등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42	26,020	14,245	12,925	1,320	11,209	566
· 자연휴양림조성	25	10,974	6,722	5,402	1,320	3,686	566
- 설 계	2	88	62	62	-	26	-
- 조 성	7	4,200	2,940	2,940	-	1,260	-
- 보 완	12	4,800	2,400	2,400	-	2,400	-
- 용 자	4	1,886	1,320	-	1,320	-	566
· 산 립 욕 장	10	4,000	2,000	2,000	-	2,000	-
· 산 립 박물관	4	6,296	3,148	3,148	-	3,148	-
· 지 방 수 목 원	3	4,750	2,375	2,375	-	2,375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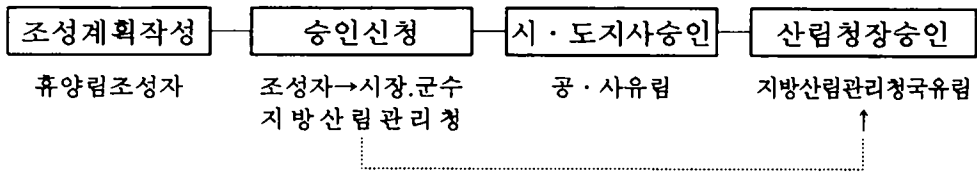
- 자연휴양림 : 시·도, 시·군
- 박물관·수목원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02-961-2338)
- 시·도 : 농정국 산림과(산지이용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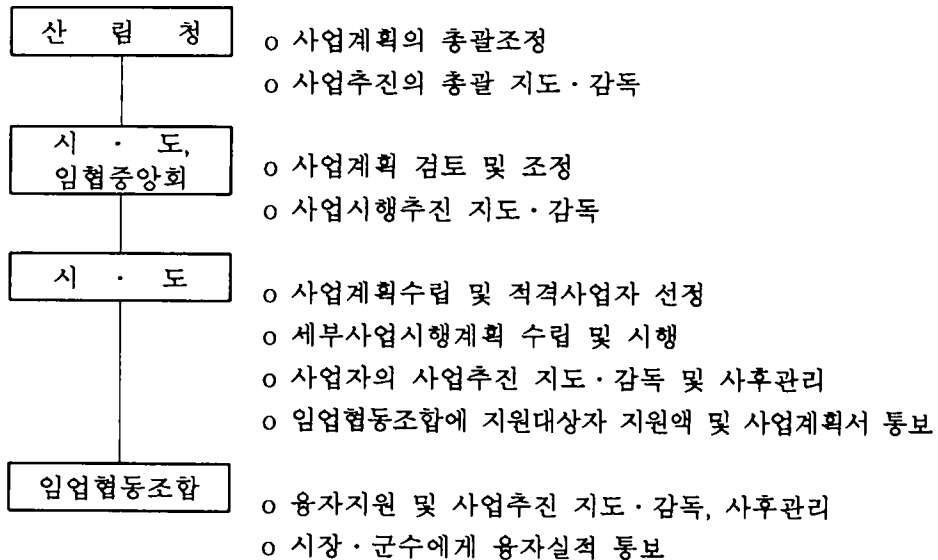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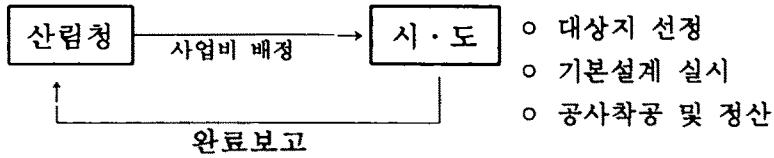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유림 자연휴양림(음자)



○ 산림박물관 및 지방수목원



- 대상지 선정
- 기본설계 실시
- 공사착공 및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 (2) 사후관리철저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총공통-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불방지도담당실입니다.

1. 목 적

산불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불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육성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의 최소화
 - 범국민적 참여 및 협조체제 구축
 - 인위적 산불발생 원인의 근원적 봉쇄
-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 조기발견, 신속신고, 즉각출동, 집중진화
 - 통합지휘체제구축 및 관계기관 공조
- 진화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 제고
 - 전문진화대 확충 및 정예화
 - 헬기확충 및 진화·안전장비의 현대화
- 산불진화교육·훈련 및 연구의 강화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0조(산불예방을 위한 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4
○ 사업량							
-	간이수조 (개)	-	100	100	100		
-	휴대용무전기 (대)	2,000	600	615	600		
-	등짐펌프 (개)	-	-	3,800	3,800		
-	방연마스크 (개)	-	430	2,530	2,530		
-	방염텐트 (개)	-	430	2,530	2,530		
-	방 화 복 (착)	-	430	-	1,900		
-	안 전 모 (개)	-	-	-	1,900		
-	고압에어소화기 (대)	-	-	-	432		
-	산불진화급식비 (명)	800,000	100,000	133,000	133,000		
-	산불진화출동비 (명)	-	-	-	40,000		
-	산불감시탑 (동)	240	60	100	100		
-	산불진화차 (대)	-	-	55	70		
사업비	계	백만원 2,795	1,988	4,253	5,365		
	보 조	909	676	1,276	1,610		
	지 방 비	1,886	1,312	2,977	3,755		
	자 부 담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배경 : 매년 산불발생건수는 증가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으나 농산촌 인구감소, 노령화로 인력진화가 어려워 인명,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므로 정부차원의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국고지원
- 지원대상 : 시·도(시·군·구)
- 지원시설 종류 및 지원단가

(단위 : 원)

사업종류	보조율	단위	지원단가	비고
○ 간이수조	30%	개	2,000,000	
○ 휴대용무전기	30%	대	800,000	
○ 등짐펌프	30%	개	50,000	
○ 산불진화급식비	30%	명	5,000	
○ 산불진화출동비	30%	명	10,000	
○ 안전장비				
- 방연마스크	30%	개	20,000	
- 방염텐트	30%	개	80,000	
- 방화복	30%	착	50,000	
- 안전모	30%	개	25,000	
○ 고압에어소화기	30%	대	959,280	
○ 산불감시시설	30%	동	2,000,000	
○ 산불진화차	30%	대	30,000,000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70%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 만 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365	1,610	1,610	-	3,755	-
- 산불진화차 (대)	70	2,100	630	630	-	1,470	-
- 산불감시시설 (동)	100	200	60	60	-	140	-
- 간이수조 (개)	100	200	60	60	-	140	-
- 휴대용무전기 (대)	600	480	144	144	-	336	-
- 등짐펌프 (개)	3,800	190	57	57	-	133	-
- 방연마스크 (개)	2,530	51	15	15	-	36	-
- 방염텐트 (개)	2,530	202	61	61	-	141	-
- 방 화 복 (착)	1,900	95	29	29	-	66	-
- 안 전 모 (개)	1,900	48	14	14	-	34	-
- 고압에어소화기 (대)	432	734	220	220	-	514	-
- 산불진화급식비 (명)	133,000	665	200	200	-	465	-
- 산불진화출동비 (명)	40,000	400	120	120	-	280	-

다. 시행지침

○ 산불진화출동비 및 산불진화급식비

- 산불진화출동비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직접 참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 산불진화급식비 : 산불진화에 참가한 민간인을 대상
- 산불진화장비
 - 고압에어소화기 : 강력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장비로서 진화능력 및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
 - 산불진화차 : 임도시설등 산불진화기반시설과 산지의 형태 등을 감안하되 동판 및 진화능력이 우수한 장비를 구입
 - 휴대용무전기 교체 : 산불관리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산림종합무선통신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무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되 민간의 TRS 통신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TRS 형식의 통신용 장비를 구입
 - 간이수조 : 동력펌프 및 진화대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반 및 사용이 용이한 것을 구입 활용
 - 방연마스크등 안전장비 : 진화대원 안전을 위한 장비이므로 국·내외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
 - 기타장비 : 기관실정에 맞는 적정한 장비구입·활용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불방지도담당실(02-961-2336)
- 시·도 : 녹지(산림)과
- 시·군·구 : 녹지(산림)과

다. 사업시행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도별 시달
- 시·도 :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군별 시달
- 시·군·구 : 산불방지활동, 산불진화장비구입, 감시원배치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불방지 추진상황 지도점검 실시(2회 : 봄철, 가을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산불진화차	'98년	2001년	4년	70대
휴대용무전기	'98년	2005년	8년	600대
휴대용진화총	'98년	2005년	8년	50대
고압에어소화기	'98년	2005년	8년	432대
간이수조	'98년	2005년	8년	100개
등짐펌프	'98년	2005년	8년	3,800개
산불감시시설	'98년	2017년	20년	100동

94	사 방 사 업 (공 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입니다.

1. 목 적

황폐지(산지·해안·계천)를 복구녹화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예방과 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
산정 → 산복 → 댐 → 야계
- 5대강유역·임업진흥촉진지역·산별시범단지내 우선 실시
- 적지적공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년	'96년	'97년	'98년 (예산안)	'99년	2000-2004
사 업 량	산 지 사 방(ha)	1,247	58	133	110		
	예 방 사 방(ha)	176	30	20	20		
	해 안 사 방(ha)	41	10	25	-		
	야 계 사 방(km)	509	102	67	60		
	수질정화시설(개소)	-	-	3	3		
	사 방 댐(개소)	249	45	70	75		
	마을환경사방(마을)	-	-	3	-		
사 업 비	계	75,042	21,421	26,866	25,633		
	국 고	52,866	15,047	19,405	17,944		
	지 방 비	22,176	6,374	7,461	7,689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 산사태발생지등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시설하고, 지피식생 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예방사방

- 주택가, 산업시설주변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해안사방

- 해안모래언덕의 이동 및 모래날림방지를 위한 울타리시설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야계사방

- 산간 황폐계곡의 산기슭을 고정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계상의 침식방지 및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사 방 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횡공작물 설치하는 공사임.

※ 댐에는 저사·저수가 겸하도록 시공하여 산불진화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25,633	17,944	17,944	-	7,689	-	
산 지 사 방	110ha	3,870	2,709	2,709	-	1,161	-	
예 방 사 방	20ha	925	648	648	-	277	-	
야 계 사 방	60km	7,641	5,349	5,349	-	2,292	-	
수질정화시설	3개소	306	214	214	-	92	-	
사 방 댐	75개소	12,891	9,024	9,024	-	3,867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02-961-2362)
- 시·도 : 농정국 산림과(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산림환경연구소 : 사방사업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선정기준

- 사방사업은 황폐산지 또는 황폐계천을 대상으로 토사유출 등으로 하류의 농경지·산업시설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임.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격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

- ①가옥·산업시설, 공공시설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②농경지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③자연경관보전에 저해되는 곳 등

○ 선정절차

-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일괄 조사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행함.
- 그러나 지역주민이 각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 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 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 6월 : 준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계획변경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20%이상 증감시는 산림청장의 승인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10~20%미만 증감시는 시·도지사의 승인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10%미만 증감시는 산림환경연구소장 승인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실행 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
 ↓↑ 과 협의 국고소요액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예산신청
 ↓↑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 지시
- 산림환경연구소 : - 익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예산신청
 (특·광역시 녹지과,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제주도 산림환경과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후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나. 보고·기타

-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과 입니다.

1. 목 적

- 산림지역의 산성비 실태를 파악하고 임업적 대처방안 개발
- 야생조수 서식지보호를 통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 펄 가공이용도를 증대시켜 사육농가 소득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성비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피해지역 회복실연사업 추진
- 야생조수실태조사 및 조수보호구설정 확대와 서식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 노거수등의 보호·관리 강화
- 전국 4개 권역별로 각5개소씩 총 20개소의 펄가공공장 설치

3. 근거법령

- 산림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1호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비 : 백만원)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	산성비모니터링	-	65	65	65		
-	조수서식실태조사	72	18	27	27		
-	서식환경조성	16	4	4	2		
-	보호수외과수술	160	40	40	50		
-	철새조망시설	-	1	1	-		
-	펄이용가공시설	8	2	2	2		
-	산림입지조사	1,519	1,100	1,000	1,000		
사	계	6,624	2,704	3,847	3,098		
업	- 보 조	2,899	2,444	3,181	2,581		
	- 용 자	2,342	126	126	126		
	- 지 방 비	379	80	486	337		
비	- 자 부 담	1,004	54	54	54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도, 산림환경연구소, 시·군, 펄이용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자
- (2) 지원조건
 - 산성비모니터링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야생조수실태조사, 서식환경조성, 보호수의외과수술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펄이용가공시설 : 융자 70%, 자부담30%
- (3) 사업내용

<산성비 모니터링>

- 전국 65개 고정조사구에서 산성비모니터링 및 산림피해 조사평가
- 도산림환경연구소의 산성비 모니터링 장비의 현대화
- 산성비 피해 산림에 대한 피해회복 실연사업 추진

<야생조수 보호관리>

- 전국 810개 고정조사구에서의 야생조수 서식실태조사(매년 405개소씩 격년으로 조사)
- 야생조수 서식환경개선사업 추진
 - 조수보호구 경계표시, 안내판 정비, 서식공간(소구역 공한지) 확보, 먹이식물 식재등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보호·관리 강화
 - 주요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조수보호구 지정
- 야생조수 불법포획, 밀매행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보호수 지정 확대
 - 보호수 지정·관리 철저
 - 노목·거목·희귀목등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관리
 - 보호수중 수간이 부패되거나 구멍등이 생겼을 경우 외과수술 실시
- 펄 이용 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 산 액 (보조:일반, 용자: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3,098	2,707	2,581	126	337	54
산성비모니터링	65개소	299	239	239	-	60	-
야생조수서식실태조사	27명	402	201	201	-	201	-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2종	72	36	36	-	36	-
보호수의과수술	50본	80	40	40	-	40	-
팽이용가공시설	2개소	180	126	-	1, 126	-	54
산림입지조사	1,000ha	2,065	2,065	2,065	-	-	-

1) 용자조건 : 연 5%, 3년거치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관리청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도 : 사업지도·감독
- 시·군 : 사업대상자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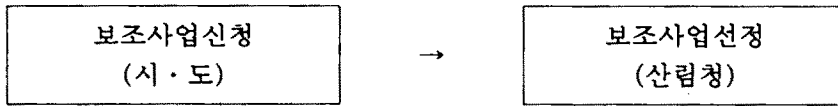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환경과(02-961-2382~5)
- 시·도 : 산림과, 산림관리과, 산림환경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환경과
- 지방산림관리청 : 운영과, 경영팀
- 용 자 : 임업협동조합

다. 대상자 선정

<산성비 모니터링>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 산성비 측정장비 구입은 기본조사장비 구입 우선

○ 선정절차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 선정기준

- 조수보호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조사업 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 대상자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 조수보호구의 개소수 및 면적을 많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
- 야생조수실태조사 예산의 50%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자치단체
- 야생조수실태조사 결과 서식밀도가 높은 자치단체
- 보호수 지정이 많은 자치단체

○ 선정절차



<팽이용가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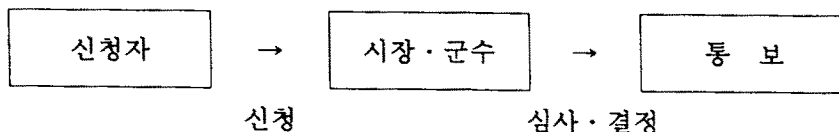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투자 가능한 자
- 국내산 팽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팽사육 경험이 많은 자
- 새로운 팽가공식품을 개발 제조코자 하는 자
- 팽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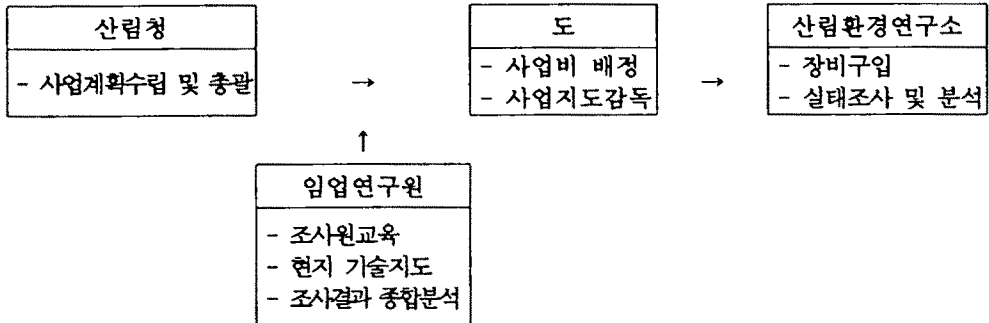
○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산성비모니터링>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 조수보호및수립에관한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 5년마다 조수보호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제3차 조수보호기본계획 : '97~2001
- 조수보호및수립에관한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와 조수보호기본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
- 현지여건을 기초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천재지변 또는 정책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계획 변경
-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한 계획수립(외과수술 포함)

<펄이용가공시설>

- 사업신청자는 월별추진 및 가공용 펄의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산림청에 제출
- 총사업비의 축소가 없고 전체 작업공정의 50%이내 진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마. 기타 사항

- 산성비 모니터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 추진
- 야생조수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환경조성은 시·군이 임업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로 시행

- 보호수의과수술은 시·군이 사단법인 한국수목연구회 또는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 및 용역으로 시행
-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유자
-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목적외에 지원자금을 사용 할 경우 즉시 회수후 산림청에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산림과(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공원과)

나. 신청자격

- 펄 사육자중 펄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자
- 펄을 이용한 제조시설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4항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기타사항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동년 3월말까지 산림청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 입니다.

1. 목 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소득이 있는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 조성
- 정주민구의 증가를 통해 주변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관리 도모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로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
- 소득기반 조성에 중점투자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병행추진하여 소득이 있는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
- 정주권개발과 연계한 특색있는 산촌개발 추진
 - 중심마을 : 공동시설확충, 제재소등 목가공시설 지원
 - 산촌마을 : 정주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사업등 지원
 - 주변산림 : 임도시설, 휴양림조성, 간벌등 산림사업 추진
- 산지, 산림, 산촌을 통합한 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1(4)마을	3(5)	5(16)	16(22)		
사 업 비	계	2,549	7,118	12,080	12,495	
	보 조	1,909	4,238	6,480	6,895	
	용 자	640	1,920	3,200	3,200	
	지방비 자부담	-	960	2,400	2,400	

※ ()내는 사전설계 마을수임.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과거의 국토종합개발은 수도권 인구억제 및 광역개발정책등으로 국토의비 균형발전을 초래
- 산촌은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등 정부시책에서도 소외
 - 인구의 과소화·노령화로 주변산림의 경영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
- 그러나 산촌지역은 그 자연적·입지적 특성상 주변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정비가 필연적 임
- 따라서 치산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을 『산림과 산지,산촌』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전환하고
 - 산촌을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서 특색있는 임업촌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지원대상자 : 산촌지역주민

(3)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00백만원(사업기간 2년)
 - 보 조 : 1,0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음 자 : 400백만원
 - 산촌소득원사업 : 금리 5%, 거치/상환(3/ 7)
 - 주 택 증· 개축 : 금리 3%, 거치/상환(3/ 7)
 - 주 택 신 축 : 금리 5%, 거치/상환(5/15)
- 마을설계 : 마을당 59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별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보조금 (10억)	소득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저장·판매시설 ◦ 임산물이용가공시설 ◦ 산촌휴양시설 ◦ 밀원단지, 임간방목장 조성 등 	500
	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등 생활편의시설 ◦ 오폐수처리,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정화시설 ◦ 진입로, 마을안길 정비등 교통편의시설 	500
용자금 (4억)	소득원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수종 및 관상수 생산, 야생화원 조성 ◦ 산나물, 버섯 재배 ◦ 장뇌삼, 산더덕 등 특용작물 재배 	100
	주택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신축(10동 기준) ◦ 주택 중·개축(20동 기준) 	300

※ 사업내용은 마을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사업내용

- 소득원 개발 :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 버섯, 산나물, 관상수, 야생화, 특용작물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과 산촌휴양시설등 소득기반 조성
 - 흑염소·토종닭·한봉등 가축사육과 향토음식점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 쾌적한 주거환경기반 조성
 - 상하수도, 마을안길 정비, 오폐수처리시설등 주거환경 개선
 - 주민복지회관, 공동판매장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주택의 신축 및 중·개축
- 마을특성에 따라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지원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마을)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6(22)	12,495	10,095	6,895	3,200	2,400	-
마을조성	16	11,200	8,800	5,600	3,200	2,400	-
사전설계	22	1,295	1,295	1,29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 ☎ 02) 961 - 2337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보조금 : 마을공동시설 등 지원
- 융자금 : 개발대상 산촌주민중에서 소득원사업을 하고 있는자 또는 소득원사업을 희망하는 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농산촌개발이나 산림개발 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임업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
-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개발수요등 주민의견 수립
 - 중장기개발계획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하고 개발수요와 지역여건등 분석
- 우리청소관 예산사업(마을환경사방, 임산물유통시설, 임도등)은 물론 타부처 소관 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종합 지원
 - 도입시설의 종류와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등은 지방비와 주민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계획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해 전문교수 자문, 지역주민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기본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의 개요(개발목표·방향, 지역현황등), 주요시설 계획, 투융자계획(연차별·소관별·재원별)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
-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 변경,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등

(나)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도시계획등 다른부문의 개발계획등과 조화롭게 수립하여야 함.
- 법적 제약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 또는 투자가 과도한 대형사업등으로 인한 과대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를 사전방지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회관 부지등)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을 지양하고 지방비 또는 자부담을 확보 추진

(다) 실시설계

- 기본계획을 토대로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계
-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에 경험이 있는 입업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
- 실시설계의 수립·변경절차도 기본계획의 승인 절차와 같음.

(라) 마을조성

-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 기본계획에 의해 당해연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국토이용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용지매수, 보상 및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계공무원을 공사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 하여 시행

(2)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되어야 함.
- 읍자사업은 “농특회계 읍자치침”에 의함.

(3) 기타사항

-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산촌개발사업지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여건 조성
 - 다른 법률의 의제, 배제로 제한사항 해소 및 부담금 면제
- 예산신청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내무부, 환경부사업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하여 예산신청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계획수립과 실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임업관련단체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산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도, 시·군에서는 농림·내무·건설·산림과장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 자문교수 위촉
 - 지역대학교수를 분야별(산림, 지역계획, 건축·주택, 농가소득등) 자문교수로 위촉하여 현지조사·설계 등에 자문
- 현장보존 관리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촬영·보관 및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종물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2항 및 제35조, 시행령제15조)

나. 보 고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결후(총공통-9)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선정기준

- 산촌지역으로 구분된 498개 읍·면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마을
- 산촌개발후 정주민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큰 30~50호 정도의 자연부락중 집단마을
- 산촌개발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높으며, 마을에 개발주체(사람)가 있고, 개발능력이 있는 지역
- 임야율 75%이상, 경지율 15%미만등 산촌구분지표에 부합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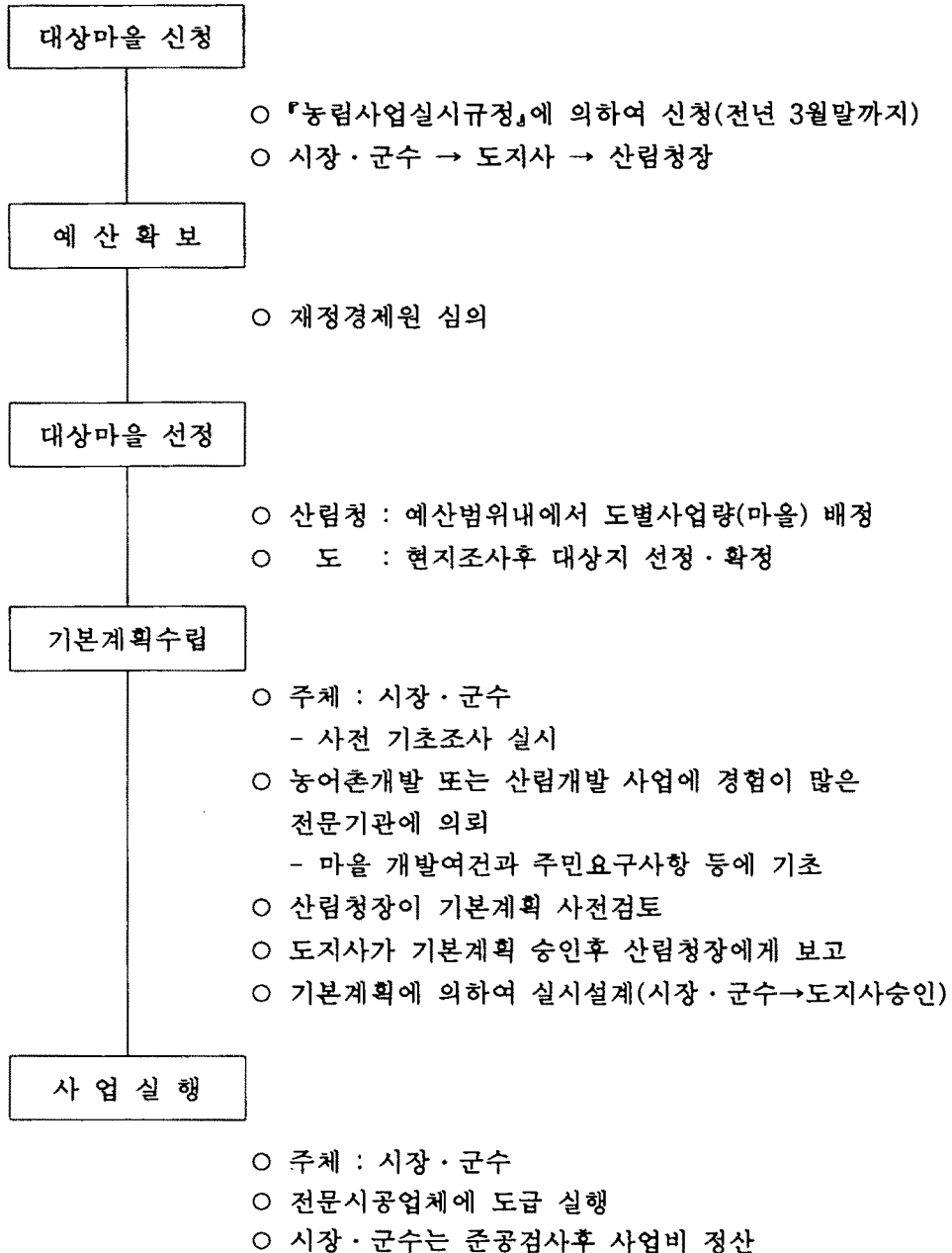
(2) 우선순위

- 자연휴양림과 연계 개발(이미 조성또는 조성예정지)하여 산촌마을과 휴양림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마을
 - 산촌에는 휴양림 이용객의 민박유치, 휴양림에는 산촌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등
- 협업체나 영림단이 조직되어 산림사업 실행을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마을
- 임산물주산단지 또는 임산물 유통·이용가공시설의 설치와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 도 또는 시·군자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농림부·내무부등 타부처 연관사업의 연계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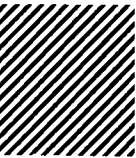
(3) 선정절차

- 지침시달 →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 → 대상지확정 → 보 고
(산림청) (시·군) (도) (도→산림청)

(4) 사업추진 절차



V. 산 림 자 원 조 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과입니다

1. 목 적

-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보호·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40년까지 7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 목표
-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 임업진흥촉진법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4
사업량(ha)	5,597	7,454	11,100	13,000		
사 업 비	계	3,930	6,580	8,379	11,700	
	보 조	-	-	-	-	
	음 자	2,006	3,014	5,786	8,190	
	지방비 자부담	- 1,924	- 3,566	- 2,593	- 3,510	

5. '98년도 사업실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해외조립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용자 신청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임업진흥기금
 - 지원비율 : 사업비의 70%이내
 - 지원내용 : 해외조립에 필요한 사업비
 - 용자조건

사업별	금리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용자비율
		구분	계	거치	상환		
해외조립	연3%	속성수	10(동남아) 15(대양주,남미)	7 10	3 5	없음	조립사업비의 70%이내
		장기수	25	15	10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임업진흥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해외조립	ha 13,000	11,700	8,190	-	8,190	-	3,510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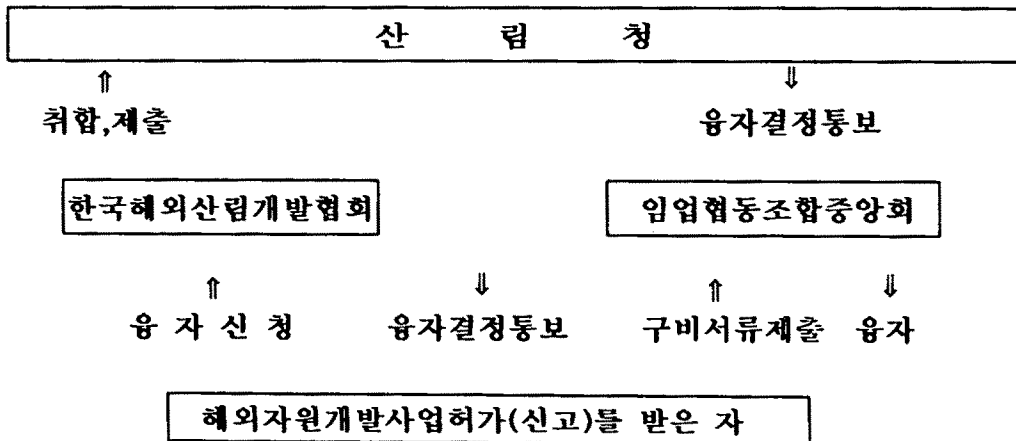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지원 결정 : 산림청 국제협력과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국제협력과(02-961-2344)
 - 해외조립등 해외산림개발실적,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액 결정
-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02-733-3453)
 - 업체별 융자신청서를 취합, 산림청에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부 (02-416-9421)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조립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 우선순위 : 없음
- 선정절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산림청 : 해외조림실적 확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

- 사업추진실적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

나. 신청자격

(1)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연도 조림대상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2) 우선순위 : 없음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선정절차 : 해외조림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 → 심사 → 융자금 결정
→ 민원인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 ※ 사업계획 심사 : 조림예정지 정리, 양묘, 식재, 사후관리등 작업단계별 타당성 및 적정비용을 검토

라. 구비서류

- 해외조림사업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99년도 사업계획 확인서 1부(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 확인)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부(산출관련 증빙서류 첨부)
- ※ 서식 : 붙임

마. 기타 참고사항 : 임업진흥기금 융자지침 참조

[별지 제1호서식]

해외조립사업 용자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량(ha)		
	사업소재지	국가			단비(\$/ha)		
		지역			조립수종		
	사업비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용자		
		천\$					
천원							
농림사업실시에관한통합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 확인서 1부 (진출국주재 아국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별첨1 서식)							

<별첨 1>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 종	면 적 ha	본 수 본	총조립비 US\$	사업기간	비 고

2. 사업비 산출내역(ha당 사업단비)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계					
(1)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비사용시 구체적으로 명시
(2)식 재 -인건비 -기 타					장비사용시 장비사용료 계상
(3)조립지관리 -인건비 ·풀베기 ·기 타					
(4)자재대 -묘 목 -기 타					
(5)기타비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환율 : US\$ = 원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입니다.

1. 목 적

-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 조림수종을 다양화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제고
-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하여 조림성과 거양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2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임업기술지도, 조림 및 육림의 장려
 -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천연보호림·시험림 및 조수보호 등 지정 산림의 관리
 -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4	
합 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454,423	162,425	165,343	185,870		
		보 조	149,810	60,595	71,409	80,473		
		지방비	119,845	49,439	51,766	60,569		
		융 자	45,301	14,573	14,906	16,356		
자부담	139,467	37,818	27,262	28,472				
조 립	사업량(ha)	105,000	19,700	16,200	15,450			
	사 업 비	계	177,164	59,631	52,670	62,342		
		보 조	76,436	30,726	32,896	37,594		
		지방비	50,398	20,870	13,253	17,690		
		융 자	7,816	2,485	2,733	3,450		
자부담	42,514	5,550	3,788	3,608				
육 립	사업량(ha)	677,757	188,370	215,180	213,365			
	사 업 비	계	238,711	91,884	102,130	114,968		
		보 조	73,374	29,869	38,513	42,879		
		지방비	69,447	28,569	38,513	42,879		
		융 자	14,356	5,542	5,847	7,770		
자부담	81,534	27,904	19,257	21,440				
묘목 생산	사업량(백만본)	164	64	60	46			
	사 업 비	계	38,548	10,910	10,543	8,560		
		보 조	-	-	-	-		
		지방비	-	-	-	-		
		융 자	23,129	6,546	6,326	5,136		
자부담	15,419	4,364	4,217	3,424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장기조림계획에 소요되는 묘목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통하여 우량용재생산 기반조성

(2) 지원대상자

- 보조사업 : 조림, 육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산주
- 융자사업 : 조림, 육림사업 및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청자 (산주,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

(3) 지원조건

○ 조 립

- 국고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70~90%
- 큰나무조림 : " 50~70%

- 융자

- 자력사업 : 사업단비를 기준으로 100%까지 융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융자

○ 육 립

- 국고보조 : 사업비의 40%

- 융 자

- 자력사업 : 융자사업비를 기준으로 100%까지 융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융자

- 묘목생산 : 묘목생산비의 60%

(4) 융자지원 조건

○ 조립 및 육림

- 경제수 : 연 3% (20년거치 15년 상환)
- 기 타 : 연 3% (10년거치 5년 상환)

○ 묘목생산 : 연 5% (3년거치 2년 상환)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보조·일반, 융자·기금·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사업량						
	사업비	185,870	96,829	80,473	16,356	60,569	28,472
조립	사업량(ha)	15,450					
	사업비	62,342	41,044	37,594	3,450	17,690	3,608
육림	사업량(ha)	213,365					
	사업비	114,968	50,649	42,879	7,770	42,879	21,440
묘목 생산	사업량 (백만본)	46					
	사업비	8,560	5,136		5,136		3,42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립·육림 : 시·군
- 묘목 생산 : 시·도(임업협동조합 : 융자금 취급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02-961-2353~6)
- 시 · 도 : 농정국 산림(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다. 사업시행

<조림>

-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산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수종갱신 대상지 등 위주로 선정
- 조림예정지 정리
 - 주변불량림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회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 위주로 선정
- 조림
 - 수하식재, 혼효조림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 경제수 : 2,000~5,000본/ha
 - 큰나무 : 1,500본/ha(1,000~2,000본/ha)
- 묘목 비료 수급 : 조림설계에 따라 수급
-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육림>

- 풀베기 : 조림후 3~5년간 6~8월사이에 년 1~2회 실행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후 5~10년된 임지에 6~9월사이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성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등을 제거
- 덩굴제거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11월 사이에 약제(근사미, 디캄바) 주입 등으로 제거
- 천연림 보육
 - 예정지 선정이 용이한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2~11월에 형질이 좋은 미래목을 ha당 400본 내외를 선정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 치수보육대상지 :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천연 임분
 - 유령림 보육대상지 : 평균수고 4~12m정도로서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고 울폐되어 수관경쟁이 심한 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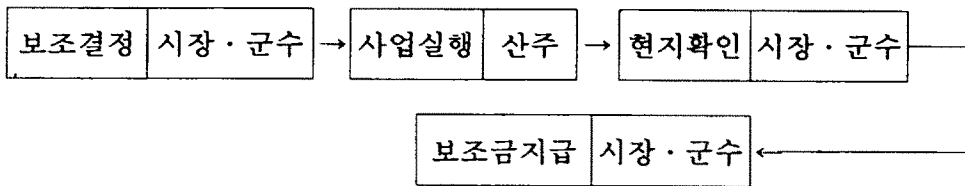
<묘목생산>

- 정부조림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종묘판매업 등록을 한 자중 정부지정묘목생산자별로 사업량을 지정한 후 책임 생산토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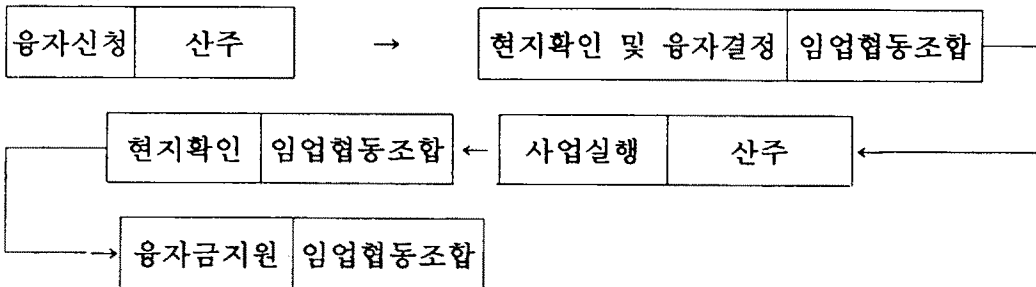
라. 사업비 지원방법

<조립 및 육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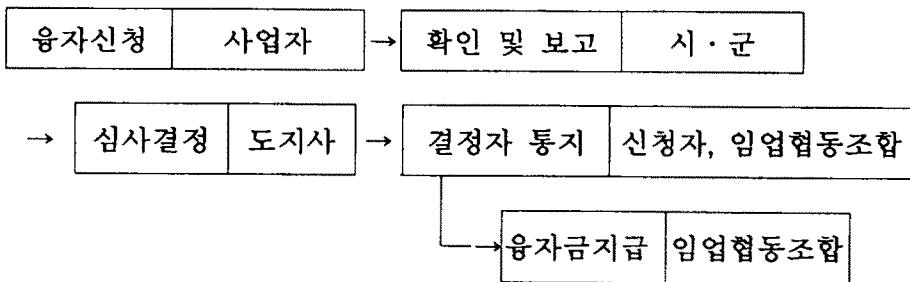
○ 보조사업



○ 육자사업



<묘목생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체

- 조립 및 육립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묘목생산 : 묘목생산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2) 사후관리

○ 방법

- 조립목에 대한 검목실시(2회)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립 및 육립사업 실행상황을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
- 현지도점점 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양묘 포지 육묘관리와 양묘사업상황, 생산실태조사(년2회) 실시

나. 보고 기타

<조립 및 육립>

- 조립실적보고 : 춘기조립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립·활착상황 보고 :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묘목생산>

- 양묘사업 실태점검 조사결과 : 매년 5월말, 10월말까지
(일반통계승인번호 13609)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조립 및 육립>

- 보조사업 : 시·군 산림(녹지)과
- 읍자사업 : 시·군 입업협동조합

<묘목생산>

- 읍자사업 : 시·군

나. 신청자격

<조립 및 육림>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용자사업
 - 영림계획상 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자격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 등록을 한 자중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다. 신청절차

<조립 및 육림>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용자사업 : 사업 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묘목생산>

- 용자사업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가 시·군 경유 시·도지사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용자사업 : 임업진흥자금 용자신청서(별지 2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용자사업)기준 및 우선순위

<조립>

- ①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 ②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 ③ 수종갱신 대상지
- ④ 벌채한 산림

<육림>

- ①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②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묘목생산>

- ① 정부지정묘목 생산자중 시·군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
- ② 전년도 예산부족 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육림사업(보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m')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읍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m ² (ha)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별지 제2호서식]

임업진흥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융자	자담	보조	

199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 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99 산림병해충방제(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담당실 입니다.

1. 목 적

- 각종 산림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국토경관보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적기예찰,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증대 및 신종병해충 발생차단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방제사업은 우량소나무림 집단지, 관광사적지, 국·철도변 등의 특정지역을 중점방제
- 산주의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잣나무넓적잎벌, 밤나무해충 등은 항공기 우선투입하여 적기방제 실시
- 천적방사, 저공해약제사용 등 생태적방제 확대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 시행령 제108조의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4
○ 사업량 (천ha)		980	223	235	239		
-솔잎혹파리		282	86	94	91		
-솔껍질깍지벌레		37	13	16	16		
-소나무재선충		10	1	1	3		
-흰불나방, 기타		651	123	124	129		
계		107,583	39,757	49,682	54,879		
사 업 비	보 조	44,504	16,668	20,490	25,026		
	용 자	-	-	-	-		
	지 방 비	58,548	21,372	26,360	26,996		
	자 부 담	4,531	1,717	2,832	2,857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 요

- 전국산림 6,448천ha의 약 6%인 370천ha의 산림에 솔잎혹파리등 10여종의 해충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제를 통하여 산지자원화촉진

○ 사업내용

- 솔잎혹파리방제 : 피해도 “중” 이상지역 및 피해도 “경”지역중 주요지역 등에 대하여 수간주사, 피해목벌채등으로 피해회복 촉진
- 솔껍질각지벌레등 기타 : 발생전면적에 대하여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약제살포 등으로 피해방지

○ 사업대상지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목벌채
 - 피해도 “중”이상의 피해임지중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
 - 영림계획서에 의한 피해목 벌채계획임지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해충은 소유자가 자력방제원칙. 다만,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소유자가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때에는 헬기지원 가능범위내에서 헬기지원
 - 1단지 5ha이상 집단조림지. 다만, 항공방제 대상구역내에 개재되어 있는 5ha 미만의 조림지는 대상지로 정할 수 있음.
 - 평균수고가 3m 이상되는 조림지로서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살포가 어려운 조림지
- 기타 : 발생전면적

○ 지원단가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목 벌채
 - 인건비보조 : ha당 412천원(국고50%,지방비50%)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항공방제용 헬기 무상지원
 - 약제대, 인건비 및 부대경비등은 산주부담
- 기 타
 - 약제대 및 인건비등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ha당 4~626천원 보조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239,150	54,879	25,026	25,026	-	26,996	2,857
- 솔잎혹파리	90,850	37,118	20,501	20,501	-	16,617	-
- 솔껍질각지벌레	16,400	5,221	2,737	2,737	-	2,484	-
- 소나무재선충	3,000	433	205	205	-	228	-
- 흰불나방등 기타	128,900	12,107	1,583	1,583	-	7,667	2,857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40천ha(자력) 포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산림보호담당과 (02-961-2404~5)
- 시 · 도 : 산림과 (녹지과)
- 시군자치구 : 산림과 (녹지과)

다. 사업시행

o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피해목벌채 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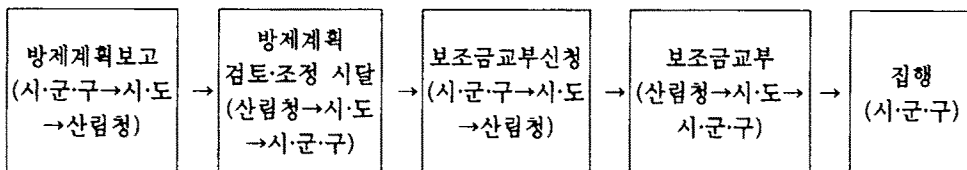
- 시장·군수는 전년도 추기에, 피해발생상황조사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보고 (시·군·구→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 피해발생상황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 보고 (시·도 → 산림청)
- 산림청장은 시·도 피해상황 및 사업계획을 검토·종합, 사업계획 수립 시달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방제 전년도 9월10일까지 항공방제신청 (산주 → 시·군·구)
- 시장·군수는 현지를 확인하여 항공방제 대상지 적정여부를 판단, 항공방제계획서를 작성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항공방제 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장은 시·도 방제계획 및 헬기지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조정 시달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o 사업비 집행방법

- 피해목벌채등 기타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헬기지원 가능범위내에서 무상지원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구

나. 신청자격

- 방제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임야소유자

다. 신청절차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별채
 - 별채희망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확정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전년도 9월 1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항공방제신청서를 조립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 기타 :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라. 구비서류

- 피해목별채허가신청서(별지 1호서식) 1부.
- 피해목별채신고서(별지 2호서식) 1부.
- 항공방제신청서(별지 3호서식) 1부.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별채
 - 솔잎혹파리피해임지중 피해도“중”이상지역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
 - 영림계획서에 의한 피해목별채 계획임지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1단지 5ha이상 집단조립지. 다만 항공방제 대상구역내에 개재된 5ha미만의 조립지는 대상지로 정할 수 있음.
 - 평균 수고가 3m 이상되는 조립지로서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살포가 어려운 조립지

○ 우선순위

- 피해목별채

- 특정지역 : 주요 관광사적지, 명승고적지, 고속도로, 국·철도변 등 경관보전지역
-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생산지, 천연보호림, 채종림, 우량 소나무림 등 자원보존지역
- 일반지역 : 특정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 밤나무 항공방제

- 독립가, 산림계, 국가유공자 또는 비영리공익법인체가 소유한 조림지
- 피해규모, 피해정도 및 개화 결실기에 따라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림지
- 조림년도, 평균수고,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상방제난도(難度)가 높은 조림지
- 1ha 미만의 영세소유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집단조림지
- 산림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정부의 유실수 식재 권장시책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조림지

○ 선정절차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까지벌레 피해목별채

- 벌채 희망임지중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피해목별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전년도 9월 1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항공방제신청서를 조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 항공방제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지를 확인하여 항공방제 대상지의 적정여부를 판단
- 시장·군수는 현지 확인한 결과 항공방제대상지로 적합한 때에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계획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시·군별 항공방제 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산림청에 보고, 산림청에서는 시·도사업계획 및 헬기지원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계획 확정시달

[별지2호 서식(산림법 별지 제69호 서식)]

※ 기재요령 ①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 기재			
<input type="checkbox"/> 입 목 별 채 <input type="checkbox"/> 산림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굴취·채취		}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입 목 별 채 5 일 산림형질변경 7 일 임산물 굴취·채취 5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당해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⑤ 산 림 소 재 지		⑥ 지 적	ha
⑦ 구역면적	ha	⑧ 벌채 임산물굴·채취 산림형질변경 } 면 적	ha
내 역	⑨ 허가종별	⑩ 수 량	⑪ 잔 존 본수
⑫ 벌채, 굴·채취, 형질변경			
⑬ 작 업 방 법			
⑭ 형 질 변 경 목 적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87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제91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제9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귀하			
			수 수 료
			없 음
첨부서류 산림형질변경의 경우 ① 형질변경실측도(6천분의1 또는 3천분의1) 1부. 단, 산림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구역도 1부. 임도시설(운재로의 경우는 6천분의1 노선구역도)의 경우는 설계도서 1부. ②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목벌채와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경우 : 없음.			

[별지3호 서식]

항공방제신청서

(단위 : ha)

개소	지번	지적	밤나무조림		항공방제면적	방제회수	방제기간	소유자	
			년도	면적				주소	성명

위와같이 항공방제를 신청합니다.

199

주소

성명 (인)

○○군수(시장)

귀하